

석사학위논문

발생주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무비율 특성 분석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회계학전공

문 호 남

2010년 2월

발생주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무비율 특성 분석

지도교수 김 동 욱

문 호 남

이 논문을 회계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문호남의 회계학과 회계전공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년 2월

**A Difference Analysis on The Financial
Ratio of Accrual Basis Financial Reporting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Moon, Ho Nam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 Wu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0 . 2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I.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II. 이론적 배경	4
제1절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4
1. 재무분석의 개념	4
2. 예산회계제도의 역사	7
3.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역사	19
4. 예산회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차이점	31
5. 일반기업의 재무분석지표	32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38
1. 재정상태보고서 분석 결과	38
2. 재정운영보고서 분석 결과	41
3.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한 지자체의 재무보고서 분석 내용	43
제3절 선행연구검토	45

Ⅲ. 연구설계	51
제1절 연구가설설정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51
1. 연구가설설정	51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52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4
Ⅳ. 실증분석	56
제1절 가설1의 검증: 지자체 유형에 따른 차이검증	57
1. 지자체 유형에 따른 재정상태비율과의 차이검증	57
2. 지자체 유형에 따른 재정운영비율과의 차이검증	60
3. 지자체 유형에 따른 회계책임비율과의 차이검증	63
제2절 가설2의 검증: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이검증	66
1.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상태비율과의 차이검증	66
2.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운영비율과의 차이검증	69
3.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회계책임비율과의 차이검증	72
Ⅴ. 결론	77
<참고문헌>	80
<Abstract>	83

< 표 목 차 >

<표2-1>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1999년	9
<표2-2>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2000년	9
<표2-3>	예산회계하의추가 29개 재정분석지표 _ 2001년	10
<표2-4>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2005년	13
<표2-5>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2006년	14
<표2-6>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2007년	15
<표2-7>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2008년	17
<표2-8>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2009년	18
<표2-9>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경과와단계	20
<표2-10>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기준 마련과정	20
<표2-11>	복식부기회계하의 재무분석지표 _ 2005년이전	22
<표2-12>	복식부기회계하의 재무분석지표 _ 2007년	23
<표2-13>	지방회계기준의구성	25
<표2-14>	2008년 재정상태보고서 서식	26
<표2-15>	2008년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 서식	27
<표2-16>	2008년 재정운영보고서(성질별) 서식	28
<표2-17>	새로운 제도하의 재무분석지표_ 3개분야29가지표	29
<표2-18>	재정상태분야지표	29
<표2-19>	재정운영분야지표	30
<표2-20>	회계책임성분야지표	30
<표2-21>	현행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의 비교	31
<표2-22>	기업회계의 경영분석지표	32
<표2-23>	일반기업 재정분석지표 _ 13가지표	37
<표2-2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산 및 부채 최대· 최소단체	40
<표2-25>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구성	40

<표2-26>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구성.....	40
<표2-2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수익 및 비용 최대·최소단체.....	42
<표2-28> 지방자치단체의 수익 구성.....	42
<표2-29>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구성.....	42
<표2-30> 선행연구요약.....	49
<표3-1> 변수의 정의.....	54
<표3-2>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집단분류.....	55
<표3-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집단분류.....	55
<표4-1> 변수의 기술통계량.....	56
<표4-2>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재정상태지표 분산분석.....	57
<표4-3>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비율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평균.....	58
<표4-4>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재정운영지표 분산분석.....	60
<표4-5>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비율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평균.....	61
<표4-6>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회계책임지표 분산분석.....	63
<표4-7>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비율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평균.....	64
<표4-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상태지표 분산분석.....	66
<표4-9>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비율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평균.....	67
<표4-10>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재정상태비율과의 상관계수.....	68
<표4-1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운영지표 분산분석.....	69
<표4-1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비율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평균.....	70
<표4-1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재정운영비율과의 상관계수.....	71
<표4-14>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회계책임지표 분산분석.....	73
<표4-15>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비율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평균.....	73
<표4-16>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회계책임비율과의 상관계수.....	75

< 그림 목차 >

<그림1> 2009년 지방재정 분석 과정18
<그림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도21



I.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효율성·회계책임성 제고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기업형 회계방식인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복식부기 시행과 동시에 많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도입성과에 대한 기대도 지대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 이해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정보를 이용한 지방재정 분석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물론 현행 예산회계제도 하에서도 재정분석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에 의하여 생성된 수입·세출자료를 중심으로 예산대비 실적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첫째,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는 자산, 부채, 비용, 수익과 예산외거래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정보 생성에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둘째, 재산, 물품, 채권, 채무 등의 분리운영으로 결산정보간의 연결성이 부족하다.

셋째, 비용 및 원가 개념의 결여로 성과평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란 지방재정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의 변동내역을 일반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산 및 부채의 실사 및 시험운영을 한 후, 2007년 1월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 53조 및 제 60조에 따라 매년 8월까지

직전연도 결산자료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시한 2007년 결산기준 재무보고서를 취합하여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를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에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등의 요약 재무제표 이외에 추가로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한 분석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분석을 위한 지표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05년에 개발하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지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30개의 지표를 사용하여왔다. 30개의 재정분석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수안정도,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증감율, 지방세체납징수율, 지방세과오납비율, 지방세수예측오차비율, 경상세외수입안정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세외수입체납징수율, 세외수입과오납비율 등 11가지의 분석지표로 구성되었다. 둘째, 세출부문에서는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자비비율, 연말지출비율 등 6가지 분석지표로 구성되었다. 셋째, 재정관리부문에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추경예산편성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순세계잉여금비율 등 5가지 분석지표로 구성되었다. 넷째, 채무관리부문에서는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2가지 지표로 구성되었다. 다섯째, 재정투명성부문에서는 재정정보공개적정성,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등 2가지 지표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국가정책이행부문에서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정착노력,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정착노력, 사회복지예산증감율, 재정지출주민만족도 등 4가지 지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08년 5월에 행정안전부가 기업회계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개발한 재무분석지표는 재무상태 9개, 재정운영 9개, 회계책임 11개 등 3개 분야 총 29개 재무비율로 구성된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8.10).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분석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재무분석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2007회계연도의 재무분석지표 비율자료와 재정자립도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특·광역시,도,시,군,구)과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SPSS 12.0의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한 후, 추가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무분석지표 비율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상관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류는 SPSS 빈도분석을 통해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 1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그리고 2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이검증을 연구 설계하고 실증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이론적배경

제1절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1. 재무분석의 개념

국내·외 문헌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수준 및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분석, 재정평가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석은 어떤 상태의 본질 및 특성을 규명하는 가치중립적 의미가 강한 반면, 평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준 또는 중요성 등을 판단하는 가치판단적 의미가 강한 개념이다. 따라서 재정분석에서 도출된 정보는 재정평가 과정을 통해 분석대상의 수준을 표시하거나 특정기준에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지표 측면에서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재정분석 지표는 주로 재정상태 또는 재정운영상황에 관한 계량지표인 반면, 재정평가 지표는 계량지표 이외에도 적정성, 개선노력 등과 같은 비계량지표를 포함한다는 차이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재정평가는 재정분석에 비해 지표 측면에서 보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과정상으로는 재정분석이 재정평가에 선행하여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처럼 재정분석과 재정평가의 개념을 구분해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재정분석에 평가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은 지방재정분석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분석에 부분적으로 평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정분석이라는 용어보다는 일반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무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는 재정보고의 목적으로 “재정보고는 정보이용자들에게 정부실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수준 및 기한에 맞게 지급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ICMA(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대한 분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은 장·단기 지급능력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Groves & Valente, 1994)

첫째, 현금지급능력(cash solvency)이란 재정상황이란 용어가 갖는 많은 의미 가운데 주로 지불의무에 대해 30일 또는 60일간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말한다.

둘째, 예산상 지급능력(budgetary solvency)이란 예산상으로 적자를 내지 않고 지출에 충당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말한다.

셋째, 장기적 지급능력(long-run solvency)이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것으로, 업무수행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매년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지출을 포함하여 장래에 지불해야하는 지급의무, 예컨대 연금비용과 고용인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등도 포함된다. 즉, 이들 미래 지급의무를 지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예산에 나타나겠지만 단기적인 재정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간의 장기적인 균형은 장기적 지급능력을 의미한다.

넷째, 서비스수준 지급능력(service-level solvency)이란 재정상황을 매우 광의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보건, 안전, 복지에 요구되는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이들 서비스를 제공할 정부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들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무분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 개념 속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이용자들에 대해 재정의무부담을 충족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서비스제공의무를 충족시킬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념정의 하고자 한다.

이처럼 재무분석의 개념을 정의하는 경우 재무분석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재정상황은 다음과 같은 지방정부의 능력을 의미한다.

첫째, 기존 서비스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건전한 재정상황에 있는 지방정부

는 현행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한다. 여기서 지속적인 서비스의 공급은 연금, 고용인휴가, 채무액, 리스구매에 따른 지급의무와 같은 미래 부채를 위한 재원조달을 요구한다.

둘째, 지역의 경제적 파탄을 견디어내는 능력이다. 건전한 재정상황은 또한 지방, 지역, 국가의 경제적 파탄을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실업증가, 세원감소, 세금체납 등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연적인 성장, 쇠퇴, 변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이다. 예컨대, 고령화 인구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청소년인구 증가로 인한 교육·레크리에이션 지출수요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재정상황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게 된다. 즉,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가, 긴급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적립재원 또는 다른 재원조달수단이 있는가, 정부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등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이 자치단체는 건전한 재정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없다면 아마도 곤란을 겪고 있거나 또는 미래에 재정적인 곤란에 처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효, 김유진, 이삼주. 2004)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을 이행하고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 결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발생주의 인식기준에 의한 회계정보는 현금주의 회계정보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유용한 재무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주의회계에 의해 생성되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는 재무제표의 성격과 기능을 밝히고 재무제표를 통해 어떠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들 회계정보를 활용한 재무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주의예산은 직접적으로 지출예정액을 표시하고 있어서 매우 명료하고 실감적이며 주민이 이해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에 비해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의사결정이나 비용편익분석, 인프라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재무관리 관점에서 자금수지의 계산 및 행정비용계산서를 통해 민간과 사업원가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들 현금

주의정보와 발생주의정보를 통해 주민에 대해 행정서비스능력, 사업비용, 자금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성과관리 및 재무관리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예산회계제도의 역사

2.1 초기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1998~2005)

1998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 공개해왔다. 1998~2000년 기간 중에 있었던 지방재정의 분석결과와 그에 대한 공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 ① 전국 자치단체의 각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관련된 재정지표의 값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다각도에서 분석·공개하였다
- ② 재정분석 작업은 법령의 요구에 의해 자치단체가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토대로 그 내용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 기준지표의 개별 값과 함께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1999년도를 전후로 지표의 유형과 수, 개별지표 값 산정 및 종합화 과정 등에 차이가 있음).
- ③ 산출된 각 지표별 점수, 종합점수를 토대로 전국 서열(또는 종합등급)을 매긴 다음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④ 초기에는 몇 가지 이유로 재정진단 대상단체를 선정하지 않았으나 2000년에는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처음으로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진단이 실시되었다.

초기의 재정분석은 분석항목과 지표의 선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의 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99년도 재정분석(1998년 결산기준)에 이르러서는 4개 부문의 7개 지표를 토대로 비교적 체계있는 분석과 공개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자주성(재정자립도, 1인당지방세수력), 효율성(투자비비율, 가용재원율), 안정성(지방채상환비율, 1인당채무부담액), 노력도(자체수입징수율)에 대한 재정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때 각 부문별로 300점(단, 노력도 부문은 100점)이 부여되어 총 1,000점 만점의 기준이 주어졌고, 지표별로 상대 중

요도를 고려하여 200점 지표(재정자립도, 투자비비율, 지방채상환비비율)와 100점 지표(1인당지방세수력, 가용재원율, 자체수입징수율)의 구분이 주어졌다.

그러나 2000년도 재정분석(1999년도 결산자료분석)에서는 기존의 지표와 산정 방식, 점수환산방식, 등급부여 및 공표방식 등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우선, 측정지표가 7개 지표에서 10개 지표로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는 기존 지표 중 3개 지표(재정자립도, 투자비비율, 지방채상환비비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지표로 대체되었다. 즉, 기존 3개 지표에다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자체수입증감율, 경상경비증감율의 7개 지표가 추가되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지표의 이론성·합리성 검증을 통하여 기준지표의 객관성이 제고된 점이 크게 인정된다. 여기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관련법령 체계·내용상의 논리성 문제(재정 효율성 관련 기준 미비, 시행령과 훈령간 상이한 기준제시 등)의 개선
- (2) 평가목표의 불일치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훈령)간 평가목표의 불일치 현상 등) 개선
- (3) 기준지표의 불일치(기준지표와 재정진단대상단체 선정의 연관성 결여 등) 개선
- (4) 지표 및 종합점수 산정의 문제점 (7개 지표간의 상관관계 존재 및 이중 가중 문제점, 특정지표의 과도한 영향, 개별지표의 분포문제, 가중치 부여로 인한 객관성 감소문제, 종합점수화 문제 등) 개선
- (5) 점수산정 및 종합화 과정의 위험부담 완화(점수 차등화 및 가중치 사용 제한)
- (6) 분석결과의 공개 및 활용방법, 재정건전화계획 등의 개선

종합적으로, 종전에 비해 한층 개선된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재정지표별로 전국적·개별적 재정정보를 분석·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거시적 조망수단 및 견제 장치로 자리 매김을 하는 한편 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재정상황 및 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자극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임성일, 2001)

<표2-1>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1999년

분야	분석지표	산식
자주성 (300)	① 재정자립도(200점)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회계세입결산액
	② 1인당 지방세수력(100점)	지방세징수액/인구수
효율성 (300)	③ 투자비비율(200점)	사업비총액/세출결산액
	④ 가용재원율(100점)	(자체사업비+ 예비비) /일반회계세출결산액
안정성 (300)	⑤ 지방채상환비비율(200점)	최근4년간 평균 지방채무상환액 /최근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⑥ 1인당 채무부담액(100점)	지방채무현재액/인구수
노력도 (100)	⑦ 자체수입징수율(100점)	자체수입징수액/자체수입징수결정액

주) 임성일, 2001. 지방재정분석·측정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표2-2>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2000년

분야	분석지표	산식	
건전성	자주성	① 재정자립도	(중전과동일)
		②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안정성	③ 경상수지비율	경상경비/일반재원결산액
		④ 세입·세출충당비율	세출소요액/(세입결산액-조상충용액)
		⑤ 지방채상환비비율	(중전과동일)
효율성	생산성	⑥ 재정계획운영비율	최종사업예산액/지방재정계획의사업비
		⑦ 세입예산반영비율	세입예산액/(세입결산액-전년도이월액)
		⑧ 투자비비율	(중전과동일)
	노력성	⑨ 자체수입증감율	당해연도 자체수입결산액/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
		⑩ 경상경비증감율	당해연도 경상경비결산액/전년도 경상경비결산액

주) 임성일, 2001. 지방재정분석·측정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 10개 단위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재정분석제도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자주성과 안정성)과 효율성(생산성과 노력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표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주성지표는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지원기준으로 사용하고 재정안정성지표는 재정진단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리고 재정보효율성지표는 재정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개 재정분석지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데 미흡하고,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생산성 등 재정운용 성과측면에서의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29개의 재정분석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배인명 외, 2001)

<표2-3> 예산회계하의 추가 29개 재정분석지표 _ 2001년

상위 목표	건전성		효율성	
하위 목표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
분석 지표	일반재원비율 가용재원비율 1인당 지방세징수액 의존재원비율 1인당주민세액 1인당주민소득(광역)	1인당채무부담액 지방채잔액지수 실질수지비율 기본적세출소요비율 재정압박지수 표준정원대비현원비율 민간위탁진행율	경직성경비비율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행사비비율 주민1인당투자규모 1억원이하사업건수 사고이월비비율 불용액비율 주민1인당세출규모	지방세징수율 세외수입징수율 지방세체납율 세외수입체납율 지방세체납액정리율 세외수입체납액정리율 경상예산절감율

2.2 30개 기준 지방재정분석지표 (2005~2007)

2005년도 재정분석(2004년도 결산자료분석)을 하면서 이전에 분석방법을 새로이 정비한 혁신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분석방법은 지방재정의 현황통계로서는 의미가 있고 유용성이 있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개선을 유도하고 상호비교, 평가를 통해 보상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전 분석방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첫째, 자치단체

결산 산출물에 대한 단년도 분석으로 통계위주의 단순한 계량분석을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개선노력도 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인센티브나 페널티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의 관심소홀로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였다. 즉, 강력한 보상시스템의 부재로 자율통제기능이 미비한 상태였다. 셋째, 공급자위주, 지표위주의 분석결과만 공개, 주민의 관심 사항인 재정운영상황 공개가 미흡하여 주민감시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의 방식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분석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새로운 재정분석 방식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대에 부응하는 재정분석 모델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80 : 20 정도의 비율로 구성하고 중요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존 정태적 분석지표 이외에 주민 관심지표 및 정책유도지표 등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축제 등 행사성 경비의 성과, 낭비성 예산의 감축노력 등 주민 관심사항지표와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정도, 자체세입 확보노력 등 정책유도지표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신뢰성제고를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유형으로 집단화하여 추세치 분석 평가, β분포 평가, 목표대 실적 평가를 위한 재정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유형별로 9등급(AAA~CCC)의 평가 결과를 서열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실효성제고를 위한 지방재정통계 관리와 추세분석을 위하여 매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면분석과 현지 확인을 병행하였다.

(2) 지방재정분석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공무원 중심의 분석기관 운영에서 탈피하여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3) 재정분석·진단결과 우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분석결과 재정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단체는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미흡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강력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 주민과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대적인 분석결과를 유형별(특·광역시, 도, 시, 군, 구)로 서열화 공개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을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였다.

2005년도 재정분석은 기존 10개의 정태적지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분석제도 혁신계획에 의거 재정관리 개선 노력도 등의 추세치를 측정할 수 있는 30개 지표로 확대운영 하였다. 지방재정의 상태와 관리·개선·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지표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지자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비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선진국 및 OECD등의 재정지표를 참조하여 재정전문가 그룹, 지자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완성하였고, 또한 공무원 중심의 분석제도에 대한 분석기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위탁 수행하였고, 분석결과 재정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재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재정관련 대학교수, 관련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40명의 재정분석실시단에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실무지원 공무원 21명을 포함 12개반 61명으로 재정운영 우수기관 등 67개 단체에 대하여 Random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분석을 위해 지표의 특성과 통계자료의 구축상태에 따라 추세분석(지방세수안정도 외 5개 지표)과 단년도 분석(추세분석 지표 외 모든 분석지표 실시)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점수산정 방식은 총 1,000점 만점에 분석지표별 적정점수를 부여하여, 계량지표 900점, 비계량지표 100점으로 제도혁신의 첫 해인만큼 비계량지표를 최소화하여 객관성이 담보되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이 소수인 광역의 경우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적용하였고, 분석대상이 다수인 기초의 경우 표준점수(Z-Score)와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병행 적용하였다. 그 결과 특·광역시와 도의 기능을 고려하여 5개 단체 유형별(특·광역시, 도, 시, 군, 구)로 분리하여, 광역단체는 3등급, 기초단체는 5등급의 A,B,C,D,E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30개의 새로운 재정분석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수안정도,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증감율, 지방세체납징수율, 지방세과오납비율, 지방세수예측도, 경상세외수입안정도, 경상세외수입징수율,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세외수입체납징수율, 세외수입과오납비율 등 11가지의 분석지표로 구성되었다. 둘째, 세출부문에서는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자비비율, 연말지출비율 등 6가지 분석지표로 구성되었다. 셋째, 재정관리부문에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체납채권비율, 추경예산편성비

을, 세입예산반영비율, 순세계잉여금비율 등 5가지 분석지표로 구성되었다. 넷째, 채무관리부문에서는 지방채무상환비율, 지방채이자부담율,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3가지 지표로 구성되었다. 다섯째, 재정투명성부문에서는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등 2가지 지표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국가정책이행부문에서는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 사회복지예산증감율 등 3가지 지표로 구성되었다.

<표2-4>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2005년

분야	분석지표	분석대상기간	
I. 세입구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	5년경향
		2. 지방세징수율	단년도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단년도
		4. 지방세체납징수율	단년도
		5. 지방세과오납비율	단년도
		6. 지방세수예측도	단년도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5년경향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단년도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단년도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단년도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단년도
II. 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	단년도	
	13. 인건비비율	단년도	
	14. 행사·축제 경비비율	3년경향/단년도	
	15. 민간이전경비비율	3년경향/단년도	
	16. 투자비비율	단년도	
	17. 연말지출비율	단년도	
	III. 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단년도
19. 체납채권비율		단년도	
20. 추경예산편성비율		단년도	
21. 세입예산반영비율		단년도	
22. 순세계잉여금비율		단년도	
IV. 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율	4년평균
	24. 지방채이자부담율	단년도	
	25. 지방채무잔액지수	단년도	
V. 재정투명성	26.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단년도	
	27.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단년도	
VI. 국가정책이행	28.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단년도	
	29.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	2년경향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	단년도	

주) 200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도자료

2006년도 재정분석(2005년도 결산자료분석)은 2005년도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기본 틀과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분석지표의 조정(3개 지표의 대체 및 지표 산출 방법 미세 조정), 지표간 가중치 부여(5개 지표 1.2, 5개 지표 0.8, 나머지 지표 1.0을 적용), 전 지방자치단체 현지실사, 전산정보시스템 개발, 주민만족도 시범 실시(지역의 축제경비지출과 주민만족도간의 관계를 시범 점검, 결과를 점수산정에 반영하지는 않음)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표2-5>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2006년

분야	분석지표	분석대상기간	점수산정방법		
			광역	기초	
I. 세입 구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	5년경향	G	z-score
		2. 지방세징수율	단년도	○	○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단년도	G	z-score
		4. 지방세체납징수율	단년도	○	○
		5. 지방세과오납비율	단년도	○	○
		6. 지방세수예측도	단년도	○	○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5년경향	G	z-score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단년도	○	○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단년도	G	z-score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단년도	○	○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단년도	○	○
II. 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	단년도/전년대비	G	z-score	
	13. 인건비비율	단년도/전년대비	G	z-score	
	14. 행사·축제 경비비율	3년경향/단년도	G	z-score	
	15. 민간이전경비비율	3년경향/단년도	G	z-score	
	16. 투자비비율	단년도/전년대비	G	z-score	
	17. 연말지출비율	단년도	G	z-score	
III. 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단년도	○	○	
	19. 체납채권비율	단년도	○	○	
	20. 추경예산편성비율	단년도	G	z-score	
	21. 세입예산반영비율	단년도	○	○	
	22. 순세계잉여금비율	단년도	G	z-score	
IV. 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율	4년평균	○	○	
	24. 지방채무잔액지수	단년도	G	z-score	
V. 재정 투명성	25.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단년도	점수 할당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단년도	점수 할당		
VI. 국가 정책이행	27. 사업별예산제도의 도입·정착노력	단년도	점수 할당		
	28.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정착노력	단년도	점수 할당		
	29. 재산세탄력세율적용정도	단년도	점수 할당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	단년도	G	z-score	

주) 200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도자료. G, ○표시는 각각 등급제(통계기준에 의한 등구간 등급화), 선행적/이론적 등급제를 의미함.

2007년도 재정분석(2006년도 결산자료분석)은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기본 틀과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2006년도 분석지표인 “재산세 탄력세율적용정도” 지표는 법률개정에 따른 정책달성으로 2007년도 재정분석 지표에서 제외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설문조사)”를 추가하였으며, 2006년도 분석결과 일부 미흡한 지표는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별 가중치부여 등을 통해 보완하였고, 또한 비계량지표의 측정내용을 강화하는 등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을 분석하였다.

<표2-6>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2007년

분야	분석지표	분석대상기간	점수산정방법		
			광역	기초	
I. 세입 구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	5년경향	G	z-score
		2. 지방세징수율	단년도	○	○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단년도	G	z-score
		4. 지방세체납징수율	단년도	○	○
		5. 지방세과오납비율	단년도	○	○
		6. 지방세수에측오차비율	단년도	○	○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5년경향	G	z-score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단년도	○	○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단년도	G	z-score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단년도	○	○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단년도	○	○
II. 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증감율 조합)	단년도/전년대비	G	z-score	
	13. 인건비비율(증감율 조합)	단년도/전년대비	G	z-score	
	14. 행사·축제 경비비율	4년경향/단년도	G	z-score	
	15. 민간이전경비비율	4년경향/단년도	G	z-score	
	16. 투자비비율(증감율 조합)	단년도/전년대비	G	z-score	
	17. 연말지출비율	단년도	G	z-score	
III. 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단년도	○	○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단년도	○	○	
	20. 추경예산편성비율	단년도	G	z-score	
	21. 세입예산반영비율	단년도	○	○	
IV. 채무관리	22. 순세계잉여금비율	단년도	G	z-score	
	23. 지방채무상환비율	4년평균	○	○	
	24. 지방채무잔액지수	단년도	G	z-score	
V. 재정 투명성	25.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단년도	점수 할당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단년도	점수 할당		
VI. 국가 정책이행	27. 사업별예산제도의 도입·정착노력	단년도	점수 할당		
	28. 복지부기회제도의 도입·정착노력	단년도	점수 할당		
	29. 사회복지예산증감율(비율조합)	단년도	G	z-score	
	30. 재정지출 주민만족도	축제행사	설문조사		

주) 200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도자료. G는 통계기준에 의한 등급제, ○는 선행적(이론적) 기준에 의한 등급제임

2.3 16개 기준 지방재정분석지표 (2008)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는 30개 재정분석지표를 안정성,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16개 계량지표(정성지표 배제)에 의한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비교 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지표유형 측면에서 기존의 재정활동(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중심에서 목표가치 중심(안정성,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으로 전환하였다. (김동욱,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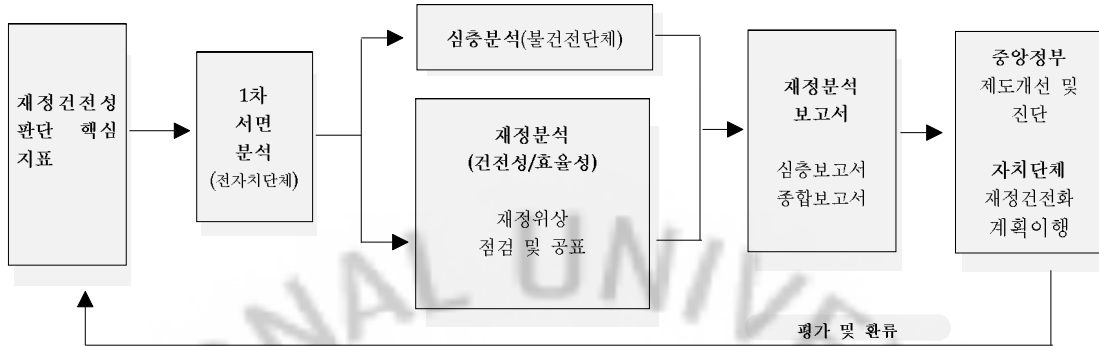
2.4 13개 기준 지방재정분석지표 (2009)

2009년 지방재정분석의 기본방향은 첫째, 지방재정 심층진단 및 재정컨설팅 기능을 확보하고자 결산중심의 개괄적인 분석에서 운영상황의 확인과 심층진단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컨설팅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저하게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심층진단단체로 선정, 정밀 진단 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 권고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재정위기에 대응한 위기관리기능 강화하고자 재정적자, 채무상환 등 지속 불가능한 재정위기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수지, 재정구조 등 재정건전성 지표 개발에 노력하였다. 셋째, 예산낭비 억제 및 재정지출 효율화 관리능력 제고하고자 예산집행 비효율, 예산낭비 등 부적정한 재무처리를 분석하고, 유사중복 투자 억제 및 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지방재정 통계작성 및 지표분석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위주로 작성하고, 부분적 재정상황 분석에서는 회계간 연결에 의한 통합분석을 이용함으로써 재정운영상황의 통합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유사단체 비교방법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위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사단체 상위 수준 목표 달성을 위한 자가 재정진단을 유도하여 자율점검 재정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예산, 복식부기지표 등 성과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증진시켜 선진형 재정분석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표2-7>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2008년

분야	분석지표	산 식
안 전 성	지방세수안정도	$[(\text{현년도분 지방세실제수납액} - \text{전년도분 지방세실제수납액}) / \text{전년도 지방세실제수납액}] \times 100$
	지방세징수율	$[\text{현년도실제수납액}(\text{지방세 실제수납액} - \text{과년도분 실제수납액}) / \text{현년도징수결정액}(\text{지방세징수결정액} - \text{과년도분 징수결정액})] \times 100$
	경상세외수입안정도	$[(\text{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text{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text{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times 100$
	경상세외수입징수율	$(\text{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text{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징수결정액}) \times 100$
권 전 성	경상경비비율	$(\text{경상경비}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인건비비율	$(\text{인건비}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채무상환비율	$(\text{최근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text{최근4년간 평균 일반채원결산액}) \times 100$
	채무잔액지수	$(\text{지방채무 순현재액} / \text{일반채원결산액}) \times 100$
효 율 성	행사축제경비비율	$(\text{행사축제경비}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민간이전경비비율	$(\text{민간이전경비}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투자비비율	$(\text{사업예산}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연말지출비율	$[\text{연말}(11\text{월} \sim 12\text{월})\text{지출원인행위액}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계 획 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text{최종사업예산액} / \text{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times 10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sum(\text{최근1년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실제예산편성액}) / \sum(\text{최근1년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당초예산편성계획액})] \times 100$
	세입예산반영비율	$[\text{세입예산액} / (\text{세입결산액} - \text{전년도이월액})] \times 100$
	세입세출충당비율	$(\text{세출소요액} / \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그림2-1> 2009년 지방재정 분석 과정



<표2-8> 예산회계하의 지방재정분석지표 _ 2009년

분	아(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범위	점수산정방법		비고	
				광역	기초		
I 재정 건전성	안정성	1. 통합재정운영수지	단년도	통합회계	G	z-score	국제기준
		2. 경상비용비율 (증감률 조합)	단년도	통합회계	G	z-score	복식부기
		3. 지방채무잔액지수	단년도	통합회계	G	z-score	
		4. 장래세대부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G	z-score	복식부기
	성장성	5. 자체세입증감률	5년경향	일반회계	G	z-score	지방세+경상세외수입
		6. 일반순자산증감률	5년경향	통합회계	G	z-score	복식부기
II. 재정 효율성	생산성	7. 행사추제경비비율 (목표대비 비율 조합)	4년경향	일반회계	G	z-score	
		8. 민간이전경비비율 (목표대비 비율 조합)	4년경향	일반회계	G	z-score	
		9.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G	z-score	사업예산
		10. 자체세입징수율	단년도	일반회계	○	○	지방세+경상세외수입
	계획성	11. 자체세입체납징수율	단년도	일반회계	○	○	지방세+세외수입
		12.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	
		13. 예산집행률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G	z-score	

주) 1)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2) G, ○표시는 각각 등급제(통계기준에 의한 동구간 등급화), 선형적/이론적 등급제를 의미함

3.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역사

3.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 및 재정상태(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을 상장기업처럼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정부부문도 민간기업처럼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는 제도로서 주요 선진국의 재정 개혁시에 채택하였던 제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는 중대한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회계는 과거 오랫동안 예산·결산절차 중심의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부터, 중앙정부의 경우 2008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의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1999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시안, 공개초안,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법적 근거를 갖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데 이르렀다. 다음 <표 2-9>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해온 그간의 경과와 단계를 요약한 것이다. <표 2-9>에서 보듯이 1999년에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2개 기관이 복식부기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되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험 운영하여 각각 2001 회계연도와 2002 회계연도부터 매년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후 여러 차례 시험운영기관을 확대하여 2005년 9월부터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을 수행하였고 2007년부터 회계제도의 본격 도입을 시작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초의 회계기준은 행정자치부가 외부용역으로 2000년 5월에 작성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시안”이며, 이 시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실무검증 및 동년 7월의 공청회를 거쳐 1차 시안이 확정되었다. 그 후 다수의 관련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제도개선협의회”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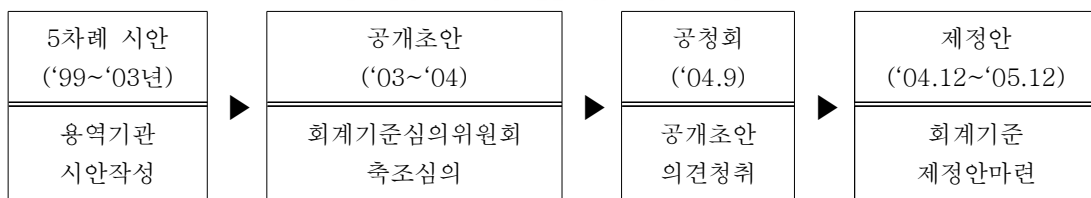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시안에 대한 검토와 토의가 이루어져 2003년 8월에 5차 시안이 발표되었으나, 최종적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으로는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에 행정자치부는 학계,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 등 15명으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개선·확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집중적인 작업의 결과로 2004년 5월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공개초안”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이후 공개초안을 수정·보완하여 2005년 7월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안”이 완성되었고, 이 제정안이 2006년 7월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입법예고된 것이다.

<표2-9>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경과와 단계

사 업 명	내 용	일 정
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계획	'99.2
복식부기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	강남구, 부천시 대상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	'99.12 ~ '01.3
	강남구, 부천시 대상 시험운영, 실제 업무 적용	'01.11 ~ '3.9
	7개 지자체 확대 시험운영 및 전산시스템 표준화	'03.9 ~ '05.2
	54개 지자체 추가 선정, 시험운영 대폭 확대(총 63개)	'04.11 ~
	187개 추가, 전 지자체 확산보급	'05.9 ~
회계기준(안) 마련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구성, 회계기준 제정안	'038 ~ '05.7
근거법령정비	지방재정법 개정(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 동법 시행령 개정	'05.8 '05.12
교육	공무원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 운영교육 실시(약 3만여 명)	'99년 이후

주) 정운환. 2006.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의 성과와 과제.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표2-10>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 마련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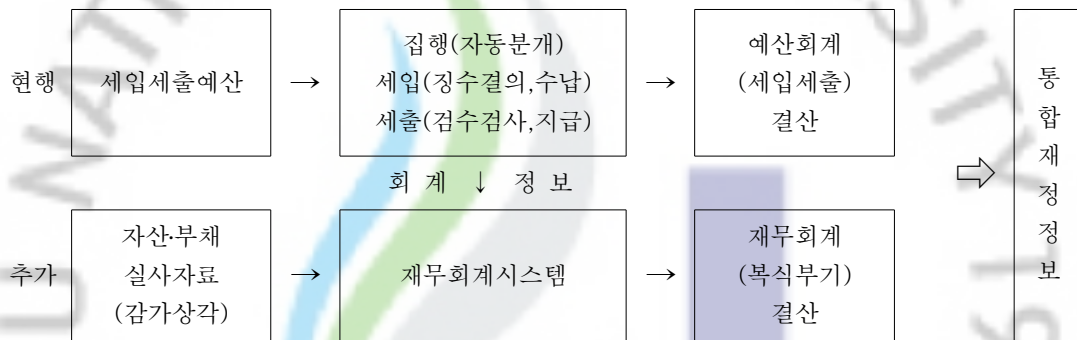


주) 정운환. 2006.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의 성과와 과제.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행정자치부 2006).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예산회계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그림2>와 같이 두가지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는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그림2-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도



주) 김혁, 200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혁신. 한국정부회계학회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3.2 29개 복식부기회계 재무분석지표 _ 2005년이전

2005년도 이전의 복식부기 회계지표는 재정운영의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회계 책임과 비용 및 성과를 중심으로 29개의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분석지표 설정방안”의 재정분석지표를 이용하여, 자주성, 안전성, 효율성, 노력성, 생산성의 5개 부문의 44개 재정분석지표를 산출하기도 하였다. 즉, 복식부기가 시범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자의 논리로 재정 분석지표를 산출하였다. 이 시점의 복식부기 회계지표는 기존현금주의(예산회계) 재정분석지표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김동욱, 2009)

3.3 13개 복식부기회계 재무분석지표 - 2006~2007년

2006년~2007년 회계연도 기간의 재무보고서는 재정의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회계책임, 비용및성과의 5개 유형에 중점을 두고 총 13개 지표로 단순화된 복식부기회계 기본지표를 정하였다.

<표2-11> 복식부기회계하의 재무분석지표 _ 2005년이전

영역	지표명	산식
자주성 (2개)	재정자립도	$(\text{지방세수익} + \text{세외수익}) / \text{총수익} \times 100$
	재정력지수	$\text{기준재정수입액} / \text{기준재정수요액} \times 100$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안정성 (12개)	경상수지비율	$\text{경상비용} / \text{경상수익} \times 100$
	세입세출충당비율	$\text{세출소요액} / (\text{세입결산액} - \text{조상충용액}) \times 100$
	총수지비율	$\text{총비용} / \text{총수익} \times 100$
	지방채상환비율	$\text{최근4년간 평균지방채상환액} / \text{최근4년간 평균총수익} \times 100$
	부채비율	$\text{총부채} / \text{총자산} \times 100$
	유동부채비율	$(\text{유동부채} - \text{감채기금 순자산}) / (\text{총부채} - \text{감채기금 순자산}) \times 100$
	고정부채비율	$(\text{고정부채} - \text{감채기금 순자산}) / (\text{총부채} - \text{감채기금 순자산}) \times 100$
	유동비율	$(\text{유동자산} - \text{재고자산}) / (\text{유동부채} - \text{감채기금 순자산}) \times 100$
	순자산비율	$\text{순자산} / \text{총자산} \times 100$
	유동자산비율	$(\text{유동자산} - \text{재고자산}) / \text{총자산} \times 100$
	고정자산비율	$\text{고정자산} / \text{총자산} \times 100$
	현금수지비율	$\text{현금유출액} / \text{현금유입액} \times 100$
효율성 (6개)	재정계획운영비율	$\text{최종사업예산액} / \text{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times 100$
	세입예산반영비율	$\text{세입예산액} / (\text{세입결산액} - \text{전년도이월액}) \times 100$
	고정장기적합률	$\text{고정자산} / (\text{고정부채} + \text{순자산} - \text{퇴직급여충당부채} - \text{장기선수수익}) \times 100$
	총자산증가율	$(\text{기말총자산} - \text{기초총자산}) / \text{기초총자산} \times 100$
	순자산증가율	$(\text{기말순자산} - \text{기초순자산}) / \text{기초순자산} \times 100$
	자체수익증감률	$\text{현년도 자체수익결산액} / \text{전년도 자체수익결산액} \times 100$
회계책임 (3개)	경상경비증감률	$\text{현년도 경상비용} / \text{전년도 경상비용} \times 100$
	수익증감률	$\text{현년도 총수익} / \text{전년도 총수익} \times 100$
	비용증감률	$\text{현년도 총비용} / \text{전년도 총비용} \times 100$
비용 및 성과 (6개)	투자비비율	$\text{고정자산증가액} / \text{총비용} \times 100$
	자체수익회수율	$\text{미수자체수익 회수액} / \text{미수자체수익 발생액} \times 100$
	지방세대손률	$\text{대손상각비(세목별)} / \text{지방세수익(세목별)} \times 100$
	인건비비율	$\text{인건비} / \text{총비용} \times 100$
	경상비용비율	$\text{경상비용} / \text{총비용} \times 100$
	감가상각률	$\text{감가상각비} / \text{감가상각자산} \times 100$

<표2-12> 복식부기회계하의 재무분석지표 _ 2007년

복식부기·발생기준 재무보고서 기준		
유형	지표명	산 식
자주성 (2개)	총수익대비 자체조달수익비율	$(\text{자체조달수익}/\text{총수익}) \times 100$ *자체조달수익=지방세수익+세외수익
	총수익대비 지방세수익비율	$(\text{지방세수익}/\text{총수익}) \times 100$
안정성 (2개)	경상수익대비 경상비용 비율(경상수지비율)	$(\text{경상비용}/\text{경상수익}) \times 100$
	부채비율	$[\text{총부채}/(\text{총자산}-\text{주민편의시설}-\text{사회기반시설})] \times 100$
효율성 (1개)	총자산 증가율	$[(\text{현년도말총자산}-\text{전년도말총자산})/\text{기초총자산}] \times 100$
회계책임 (4개)	수익 증감률	$[(\text{현년도 총수익}-\text{전년도 총수익})/\text{전년도 총수익}] \times 100$
	자체조달수익 증감률	$[(\text{현년도 자체조달수익}-\text{전년도 자체조달수익})/\text{전년도 자체조달수익}] \times 100$
	비용 증감률	$[(\text{현년도 총비용}-\text{전년도 총비용})/\text{전년도 총비용}] \times 100$
	경상비용 증감률	$[(\text{현년도 경상비용}-\text{전년도 경상비용})/\text{전년도 경상비용}] \times 100$
비용 및 성과 (4개)	미수자체조달수익증감률	$[(\text{현년도 말미수 자체조달수익}-\text{전년도 말미수 자체조달수익})/\text{전년도 말미수 자체조달수익}] \times 100$
	총비용대비경상비용비율	$(\text{경상비용}/\text{총비용}) \times 100$
	총비용대비 인건비비율	$(\text{인건비}/\text{총비용}) \times 100$
	감가상각률	$(\text{감가상각비}/\text{연평균 감가상각자산}) \times 100$

주) 김갑순, 2007. 복식부기차원에서 지방재정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세미나 발표논문.

- 1) 경상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정부간이전비용
- 2)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 지방교부세수익 + 국고보조금수익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 3) 감가상각비 :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 4) 연평균 : (전년도말 + 현년도말) / 2
- 5) 감가상각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3.4 현재 복식부기회계 재무분석지표 _ 2008년이후

행정안전부는 2008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지표를 새롭게 개선하여 1차로 5개 분야, 42개 단위지표로 구성되는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적합한 재정분석지표를 개발하였다. 추가 연구를 통해 2008년 10월에는 3개 분야 29개 지표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2007년 회계연도부터는 매년 그 다음해 8월까지 재무보고서(결산총평,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주석등)를 각각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재정상태보고서(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산, 부채의 구성 및 규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재정운영보고서(기업의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 기간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의 <표2-13>은 새로운 제도하의 지방회계기준의 구성을, <표2-14> <표2-15> <표2-16>은 새로 개발된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의 서식을 보여준다.

종전의 예산회계만으로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현금주의·단식부기)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자산의 교체시기, 기간별 성과 등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새로운 지표개발에 의한 재무분석을 통해 기존의 예산회계가 제공하지 못하던 종합 재정상황(자산·부채의 관리정보, 효율적인 수익·비용 구조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알기 쉽고 체계적인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회계책임성 및 투명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새로운 분석을 통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생주의·복식부기 관점의 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경영)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표체계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분야 29개 복식부기 회계지표로 재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2-17>, <표2-18>, <표2-19>, <표2-20>를 통해 설명하였다.

<표2-13> 지방회계기준의 구성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준 제정 목적, 기주의 적용, 용어의 정의, 재무보고의 목적과 일반원칙, 보고실체와 회계실체의 유형 등을 기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를 총괄하여 보고
제2장 재무보고서 (제7조 ~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
제3장 재정상태보고서 (제10조 ~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보고서의 의미와 구성요소 및 인식기준 · 재정상태보고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 및 분류 등을 기술
제4장 재정운영보고서 (제26조 ~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운영보고서의 의미와 구성요소 및 인식기준 · 재정운영보고서의 구성요소인 수익과 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분류 등을 기술
제5장 현금흐름보고서 (제35조 ~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흐름보고서의 의미와 구분, 작성기준 등을 기술
제6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38조 ~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의미와 구성요소 등을 기술
제7장 결산총평, 주식, 필수보 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40조 ~ 제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재무보고서의 의미와 작성지침 등을 기술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 ~ 제6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및 특수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술
부 칙 (제1항 ~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및 개시재정상태보고서 작성 ·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계상 유예

주) 김혁. 200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혁신. 한국정부회계학회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표2-14> 2008년 재정상태보고서 서식

재정상태보고서
 당해연도 20××년×월×일 현재
 직전연도 20××년×월×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회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내부 거래	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회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내부 거래	계
자산												
I.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가물												
단기금융상품												
...												
II.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												
III. 일반유형자산												
토지												
임목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IV.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V.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												
VI.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												
...												
자산총계												
부채												
I.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II.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III.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												
부채총계												
순자산												
I. 고정순자산												
II. 특정순자산												
III. 일반순자산												
순자산총계												
부채와순자산총계												

<표2-15> 2008년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 서식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

당해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회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내부 거래	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회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내부 거래	계
I.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II.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수익 국고보조금수익 ...												
III. 기타수익												
회계간접입금수익 기부금수익 ...												
IV. 수익총계												
V. 비용 입법 및 선거 일반행정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민방위관리 소방관리 지원 및 기타 경비												
VI. 비용총계												
VII. 운영차액(IV-VI)												

<표2-16> 2008년 재정운영보고서(성질별)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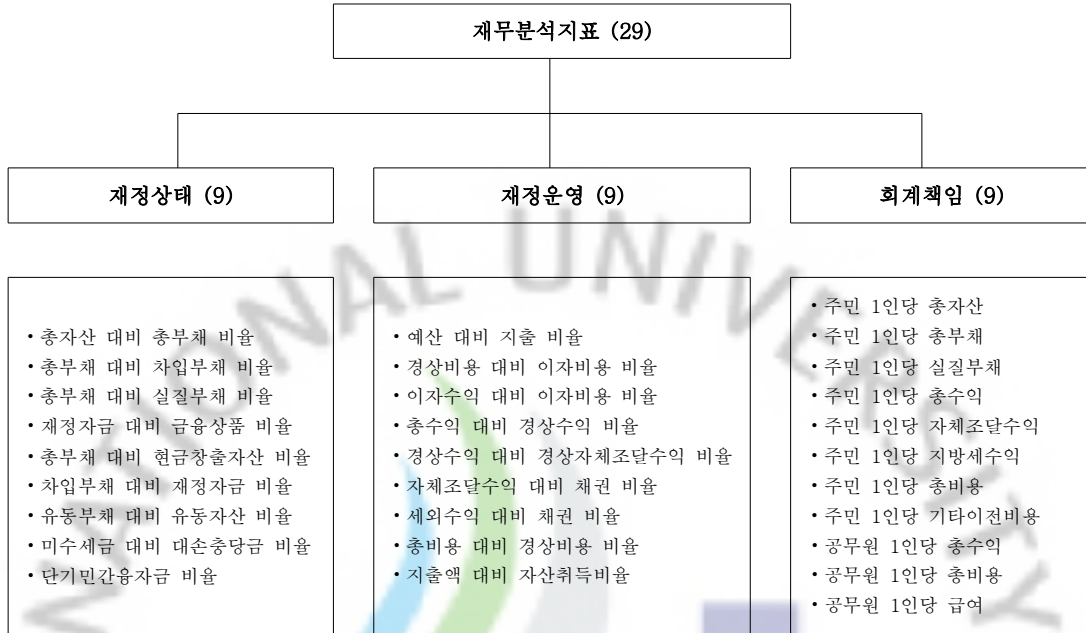
재정운영보고서(성질별)
 당해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회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내부 거래	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회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내부 거래	계
I.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의수익 임시세의수익												
II.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수익 국고보조금수익 ...												
III. 기타수익												
회계간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												
IV. 수익총계												
V.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												
VI. 운영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업무추진비 ...												
VII. 정부간이전비용												
타자치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												
VIII. 기타이전비용												
민간사회복지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 ...												
IX. 기타비용												
X. 비용총계												
XI. 운영차액(IV-X)												

<표2-17> 새로운 제도하의 재무분석지표 _ 3개분야29가지표



주) 행정안전부, 2008. 한국정부회계학회 등계세미나 발표자료.

<표2-18> 재정상태분야지표

지 표 명	산 식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 총부채 / 총자산 * 100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 차입부채 / 총부채 *100
③ 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	■ (총부채-기초단체융자금)/총부채*100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 장·단기 금융상품/재정자금*100
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 현금창출자산/총부채 ※ 현금창출자산 : (유동자산+ 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 기타투자자산
⑥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⑦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

<표2-19> 재정운영분야지표

지표명	산식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 세출액(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현액(일반회계+특별회계) * 100
②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 이자비용: 차입부채 이자비용 ※ 경상비용: 인건비+ 운영비+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③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④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⑤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 경상자체조달수익 / 총수익 ※ 경상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⑥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 미수자체조달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자체조달수익 * 100
⑦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세외수익 * 100
⑧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⑨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 자산 취득액 / 지출액 * 100

<표2-20> 회계책임성분야지표

지표명	산식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 총자산/인구수(회계연도말)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 총부채/인구수(회계연도말)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 실질부채/인구수(회계연도말)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 총수익/인구수(회계연도말)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 자체조달수익/인구수(회계연도말)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 지방세수익/인구수(회계연도말)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 총비용/인구수(회계연도말)
⑧ 주민 1인당 기타이전비용	■ 기타이전비용/인구수(회계연도말)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 총수익/공무원(현원)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 총비용/공무원(현원)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 총급여/공무원(현원)

4. 예산회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차이점

현행 예산회계는 투입, 산출에 관한 성과측정 등 정보가 부족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힘들다. 또한 각 회계간의 연결이 없고 자기검증기능이 없어 회계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자산·부채의 인식 한계로 인한 회계건전성 파악이 미흡하며, 종합적인 재정상태의 파악이 어렵다. 반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자산·부채의 관리가 강화되고 원가정보가 최대한 반영되며 감가상각비 및 부채성충당금 등의 발생주의 정보가 생성된다. 또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 정보가 반영되고 종합적인 재정상태의 파악 및 변동정보 확인이 용이해지며 정보의 이해가능성이 높아져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정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고부가가치 정보의 산출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음 <표2-21>은 현행 예산회계와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비교 요약한 것이다.

<표2-21> 현행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의 비교

구분	현행 예산회계	복식부기회계
의 의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장-관-항-목)	재정운영성과 및 재정상태 보고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등)
회계방식	현금주의 단식부기 (공기업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업형)
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재정운영, 상태보고서 등)
보고형식	회계단위별 분리보고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가치지향	행정 내부조직 중심 -예산집행통제, 법규준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
자기검증기능	없음	대차평형의 원리에 의한 회계오류의 자동검증
정치적기반	중앙집권시대(상급기관 보고)	지방분권시대(주민에 대한 보고)

주) 김혁, 200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혁신. 한국정부회계학회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5. 일반기업의 재무분석지표

기업회계에서의 광의의 경영분석은 경영자·투자자 등 기업의 내부와 외부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기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여, 광의의 경영분석에서는 회계자료 외에도 경제동향·자본시장동향·경영전략 등 비회계자료에 대한 분석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협의의 경영분석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업의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이는 주로 재무제표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분석’ 또는 ‘재무분석’이라고도 한다.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경영분석지표는 대체로 유동성비율, 안정성비율(자본구조비율),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 생산성비율, 시장가치비율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2-22> 기업회계의 경영분석지표

구 분		산 식
유 동 성	유동비율	$(\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당좌비율	$(\text{당좌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현금비율	$(\text{현금및현금성가물}/\text{유동부채}) \times 100$
	매출채권대매입채무비율	$(\text{매출채권}/\text{매입채무}) \times 100$
	순운전자본대총자본비율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 \text{총자본} \times 100$
안 정 성	부채비율	$(\text{부채총계}/\text{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text{자기자본}/\text{총자산}) \times 100$
	차입금의존도	$(\text{차입금}/\text{총자산}) \times 100$
	고정비율	$(\text{고정자산}/\text{자기자본}) \times 100$
	고정장기적합률	$(\text{고정자산}/(\text{자기자본} + \text{고정부채})) \times 100$
	유동부채비율	$(\text{유동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고정부채비율	$(\text{고정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수 익 성	매출액영업이익률	$(\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순이익률	$(\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총자산순이익률	$(\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매출액세전순이익률	$(\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금융비용부담률	$(\text{이자비용}/\text{매출액}) \times 100$
	차입금평균이자율	$(\text{이자비용}/(\text{회사채} + \text{장·단기차입금})) \times 100$
	이자보상비율	$(\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times 100$
	총자산세전순이익률	$(\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자본금세전순이익률	$(\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text{자본금}) \times 100$	

	자본금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본금)×100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	(매출원가/매출액)×100
	고정비대매출액비율	(고정비/매출액)×100
	변동비대매출액비율	(변동비/매출액)×100
	연구개발비대매출액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100
	인건비대매출액비율	(인건비/매출액)×100
	재료비대매출액비율	(재료비/매출액)×100
	순외환손익대매출액비율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매출액×100
	EBIT대매출액비율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이자비용)/매출액×100
	EBITDA대매출액비율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이자비용+ 유·무형자산감가상가비)/매출액×100
	금융비용대부채비율	(이자비용/부채)×100
	금융비용대총비용비율	이자비용/(매출원가+ 판매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100
	순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이자비용-이자수익)/매출액×100
	손익분기점비율	(손익분기점에서의매출액/매출액)×100
	사내유보비율	사내유보/(처분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이입액)×100
	배당비율	(배당금/자본금)×100
활 동 성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100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액/자기자본)×100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액/고정자산)×100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재고자산)×100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매출채권)×100
	자본금회전율	(매출액/자본금)×100
	경영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건설중인자산+ 투자자산)]×100
	유형자산회전율	(매출액/유형자산)×100
	상(제)품회전율	(매출액/상(제)품)×100
	매입채무회전율	(매출액/매입채무)×100
성 비 장 성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
	당기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00
	자기자본증가율	(당기말자기자본-전기말자기자본)/전기말자기자본×100
	유형자산증가율	(당기말유형자산-전기말유형자산)/전기말유형자산×100
	재고자산증가율	(당기말재고자산-전기말재고자산)/전기말재고자산×100
	유동자산증가율	(당기말유동자산-전기말유동자산)/전기말유동자산×100
생 비 산 율	부가가치율	(부가가치/매출액)×100
	종업원1인당부가가치증가율	(당기종업원1인당부가가치-전기종업원1인당부가가치)/전기종업원1인당부가가치×100
	종업원1인당매출액증가율	(당기종업원1인당매출액-전기종업원1인당매출액)/전기종업원1인당매출액×100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총자본)×100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100
	기계투자효율	(부가가치/기계장치)×100
	노동소득분배율	(인건비/부가가치)×100
	노동장비율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종업원수×100
	기계장비율	(기계장치/종업원수)×100
	자본집약도	(총자본/종업원수)×100
시 치 비 가 율	종업원1인당부가가치	부가가치/종업원수
	주당순이익	당기순이익/발행주식수
	주가·이익배수	주가/주당순이익
	주가·장부가치비율	주가/1인당장부가치
	배당수익률	(주당배당금/주가)×100

이들 중 일반기업 재정분석지표로 사용되는 3개 분야(안정성, 효율성, 비용 및 성과) 14개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정성부문은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율의 지표가 있고, 효율성 부문은 자산회전율과 총자산증가율이 있으며, 비용 및 성과 부문은 매출액이익영업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이 있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유동부채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당해 회계실체가 만기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검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기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상태 즉 유동부채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자산을 보유함을 의미하며, 유동자산에는 현금성이 다소 낮은 재고자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동비율이 200%이상이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유동비율이 2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자산을 보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회계실체의 부채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유동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고정부채의 조달이나 고정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유동자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총부채와 자기자본과의 비율을 통해 자본구조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지표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채권회수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낮은 부채비율을 선호하나 주주입장에서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표준비율을 설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지나치게 부채비율이 높게 되면 파산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차입금의존도는 고정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계실체가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차입금에 의존하는 비율을 분석하는 지표이다. 분자인 차입금은 장·단기 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

채 등을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한다. 따라서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분모상의 차이점 외에도 부채비율의 분자인 총부채에는 모든 부채가 포함되는 반면에 차입금의존도의 분자인 차입금에는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이자부 부채만이 포함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차입금의존도는 부채 중에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만을 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총자산 중에서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부채비율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우에는 표준비율을 설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입금의존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차입금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게 되면 파산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율은 이자보상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이자보상비율은 주요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타인자본의 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의 몇 배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 이상의 이자보상비율을 유지해야만 이자비용의 지급능력이 양호하여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자산회전율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치이다. 이는 매출액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기업이 파산하지 않는 한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에 의해 결정되고 자산은 단순히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이상적인 기업은 아무런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자산이 없으면 아무런 투자가 필요 없고 수익률은 무한대가 된다. 자산회전율은 1원의 자산이 창출한 매출액 또는 자본집약도를 나타낸다. 어느 기업의 자산회전율이 1이라는 것은 자산에 투자된 1원이 창출하는 매출액이 1원이라는 것이다. 이 비율은 또한 자본집약도의 측정치다. 낮은 자산회전율은 그 기업이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고, 높은 자산회전율은 반대로 낮은 자본집약도를 의미한다.

총자산증가율은 당기말총자산에서 전기말총자산을 차감한 값을 전기말총자산으로 나누어 전기에 비해 당기에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분석하는 지표이다. 총자산증가율은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증가하였는

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총자산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기업이 활발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현재의 경영성과 또는 미래성과에 대한 전망이 양호하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매출액영업이익율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인데, 이는 기업이 매출로부터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매출액영업이익율의 분석을 통해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고 효율적으로 경영성과를 올리고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다.

매출액순이익율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인데, 이는 기업이 매출로부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얻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특별이익·특별손실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적인 경영성과이므로, 매출액순이익율의 분석을 통해 매출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당기순이익으로 나타나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총자산이익율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인데, 이는 기업이 총자산의 이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얻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기업의 자산은 결국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보유한 것이므로 총자산이익율의 분석을 통해 총자산이 이익창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총자산의 이익창출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자본순이익율은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인데, 이는 기업이 자기자본의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자기자본의 운용효율성을 평가하는 비율이다. 자기자본순이익율은 주주가 요구하는 투자수익율을 의미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성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주주의 입장에서 자기자본순이익율을 통해 자신의 투자성과를 측정할 수도 있다.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인데, 총자산이 현금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증가율은 당기매출액에서 전기매출액을 차감한 값을 전기매출액으로 나누어 전기에 비해 당기에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분석하는 지표이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출액정보는 경영성과를 측정하

는 매우 중요한 회계정보이며, 일반적으로는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비에 의한 레버리지효과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영업이익증가율은 당기영업이익에서 전기영업이익을 차감한 값을 전기영업이익으로 나누어 전기에 비해 당기에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분석하는 지표이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주요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구한 것인데, 영익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 중에서 특히 영업활동의 성과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증가율은 후술할 당기순이익증가율과 연관성이 높다.

당기순이익증가율은 당기순이익에서 전기순이익을 차감한 값을 전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전기에 비해 당기에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분석하는 지표이다. 기업의 일정기간동안의 경영성과는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특별이익·특별손실 등이 모두 반영된 당기순이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증가율은 일정기간동안의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효과적인 지표가 된다.

<표2-23> 일반기업 재정분석지표 _ 13가지표

구분	지표명	산식
안정성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100
	부채비율	부채총계 / 자산총계 ×100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 총자산 ×100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율	영업이익 / 이자비용 ×100
효율성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00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 ×100
비용및성과	매출액이익영업율	영업이익 / 매출액 ×100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매출액 ×100
	총자산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총자산 ×100
	자기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100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총자산 ×100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 ×100
	당기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전기순이익 ×100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행정안전부는 2008년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된 2007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를 취합하여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추가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 총29개의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재정상태보고서 분석 결과

2007년말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844조 9,701억원이며, 총부채는 30조 2,113억원(총자산의 3.6%)으로 나타났다.

1.1 자산현황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규모는 평균공시지가, 사무범위 및 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규모의 차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

- ① 전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의 자산이 115조 5,745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별시·광역시 총자산규모 (240조 1,968억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②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의 총자산 규모(28조 3,055억원)가 가장 컸으나 서울시의 1/4수준이며, 충북의 자산규모(8조 13억원)가 가장 작았다. 특·광역시의 총자산 규모가 큰 것은 평균 공시지가가 도보다 더 높고, 또한 사무의 범위(특·광역시의 사무인 공원, 상·하수도 업무 등은 도 단위에서는 시·군 사무)도 넓기 때문이다. 평균공시지가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는 72만원, 도는 24만원, 시는 31만원, 군은 6만원, 구는103만원으로 나타났다.
- ③ 시 단위에서는 경기 성남시(17조 275억원)의 자산규모가 최대(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가 203만원으로 높고, 사회기반시설·주민편의시설 규모가 큼)이며, 최소인 충남 계룡시(6,737억원)의 25.3배에 이른다.
- ④ 군 단위에서는 충북 청원군(2조 3,012억원)의 자산규모가 최대(청주시에 인접하여 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9만원)가 타군에 비해 높음)이며, 최소인 경북 울

평균(2,112억원)의 10.9배에 이른다.

⑤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4조 6,779억원)가 최대(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가 783만원으로 높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규모가 큼)이며, 최소인 부산 중구(2,021억원)의 23.1배에 달한다.

1.2 부채현황 분석 결과

지자체 유형별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타 단체 융자금 규모등이 시·도와 시·군·구의 부채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① 전 자치단체 중 경기도(3조 5,775억원)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액(2조 5,216억원)이 많아 부채규모가 최대이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광역시(2조 6,357억원)가 도로, 도시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최대이며, 울산광역시의 부채규모(6,512억원)가 최소로 나타났다.

② 시 단위에서는 경기 시흥시(6,280억원)의 부채규모가 최대(군자 매립지 토지연부매입 미지급금 4,900억원 등)이고, 경기 과천시(64억원)가 최소이다.

③ 군 단위에서는 전남 신안군(592억원)이 도서식수원 개발(337억원)등 각종 사업 관련 차입금(451억원)으로 인해 최대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충북 보은군의 부채 규모(24억원)가 최소이다.

④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496억원)가 퇴직급여충당부채(176억원), 단기예수보관금(145억원) 등으로 인해 최대이며 부산 연제구의 부채규모가 최소(65억원)이다

<표2-2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산 및 부채 최대·최소 단체

구분	자산			부채		
	계	최대	최소	계	최대	최소
특별시·광역시	240조 1,968억	115조5,745억 (서울특별시)	8조9,758억 (울산광역시)	10조 3,454억	2조6,357억 (부산광역시)	6,512억 (울산광역시)
도	140조 6,439억	28조3,055억 (경기도)	8조13억 (충청북도)	9조 621억	3조5,775억 (경기도)	5,407억 (충청북도)
시	271조 4,280억	17조275억 (경기성남시)	6,737억 (충남계룡시)	7조 7,554억	6,280억 (경기시흥시)	64억 (경기과천시)
군	108조 5,083억	2조3,012억 (충북청원군)	2,112억 (경북울릉군)	1조 6,808억	592억 (전남신안군)	24억 (충북보은군)
자치구	84조 1,931억	4조6,779억 (서울강남구)	2,021억 (부산중구)	1조 3,676억	496억 (서울송파구)	65억 (부산연제구)

주) 2008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표2-25>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구성

구분	계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사회 기반시설	70.1% 592조7,513억	64.4% 154조5,987억	79.5% 111조8,800억	69.5% 188조7,787억	76% 82조4,937억	65.4% 55조2억
주민 편의시설	11.4% 95조9,951억	13.8% 33조2,465억	2.8% 3조8,837억	13.5% 36조6,086억	8.4% 9조1,066억	15.6% 13조1,497억
일반 유형자산	6.3% 52조9,064억	5.1% 12조3,736억	5.1% 7조1,076억	7.0% 18조9,508억	5.7% 6조1,833억	9.8% 8조2,911억
투자자산	4.7% 39조8,872억	11.2% 26조8,545억	6.3% 8조9,127억	0.9% 2조5,774억	1.0% 1조449억	0.6% 4,977억
유동자산	7.4% 62조3,510억	5.4% 12조8,800억	6.2% 8조7,668억	8.9% 24조556억	8.8% 9조5,671억	8.4% 7조815억
기타 비유동자산	0.1% 1조791억	0.1% 2,435억	0.1% 931억	0.2% 4,569억	0.1% 1,127억	0.2% 1,729억

주) 2008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표2-26>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구성

구분	계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장기차입부채	64.5% 19조4,781억	75.4% 7조8,027억	69.8% 6조3,299억	53.5% 4조1,477억	60.7% 1조213억	12.9% 1,765억
유동부채	26.3% 7조9,510억	19.5% 2조155억	24.7% 2조2,379억	36.1% 2조7,972억	27.9% 4,686억	31.6% 4,318억
기타비유동부채	9.2% 2조7,822억	5.1% 5,272억	5.5% 4,943억	10.5% 8,105억	11.4% 1,909억	55.5% 7,593억

주) 2008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 재정운영보고서 분석결과

총수익은 139조 6,605억원이며, 총비용은 110조 5,006억원(총수익의 79.1%)으로 나타났다.

2.1 수익현황 분석 결과

지자체 유형별 수익은 자체수익(지방세+세외수입)과 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 ① 전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의 수익이 15조 7,853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광역시 총수익(35조 8,526억원)의 44%에 해당한다.
- ② 경기도의 경우 10조 2,714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자산규모 차이(4.1배)에 비해 수익규모 격차(1.5배)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군과 자치구는 징수세목 및 세입규모가 타 유형의 자치단체에 비해 적어 수익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 ③ 전반적으로 동일유형 내에서 자산규모가 최대·최소인 자치단체와 수익규모가 최대·최소인 자치단체가 거의 일치하였다.

2.2 비용현황 분석 결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각종 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비용이 시·도와 시·군·구 비용규모 차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 ① 비용의 경우에도 전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가 13조 1,072억원으로 최대이며, 총비용 규모는 도(31조 7,900억원)가 특·광역시(29조 7,523억원)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 ② 특·광역시와 도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시·군·구에 배분(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하여 비용규모가 시·군·구와 차이가 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형태이므로, 시·군에 대한 교부액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표2-2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수익 및 비용 최대·최소 단체

구분	수익			비용		
	계	최대	최소	계	최대	최소
특·광역시	35조 8,526억	15조7,853억 (서울특별시)	1조5,875억 (울산광역시)	29조 7,523억	13조1,072억 (서울특별시)	1조2,613억 (울산광역시)
도	34조 7,113억	10조2,714억 (경기도)	2조217억 (충청북도)	31조 7,900억	9조6,565억 (경기도)	1조5,698억 (제주특별자치도)
시	35조 6,364억	1조3,758억 (경기성남시)	979억 (충남계룡시)	24조 7,645억	8,471억 (경기성남시)	561억 (충남계룡시)
군	19조 5,769억	3,869억 (전남고흥군)	1,022억 (경북울릉군)	12조 4,603억	2,374억 (충북청원군)	624억 (충북증평군)
자치구	13조 8,833억	5,089억 (서울강남구)	722억 (부산중구)	11조 7,335억	3,081억 (서울강남구)	653억 (부산중구)

주) 2008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표2-28> 지방자치단체의 수익 구성

구분	계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자체조달수익	46%	73%	39.5%	44.8%	16.8%	36.6%
	64조2,546억	26조1,864억	13조7,223억	15조9,713억	3조2,873억	5조873억
정부간이전수익	53.1%	24.1%	60.3%	54.9%	82.9%	63.2%
	74조1,297억	8조6,225억	20조9,288억	19조5,684억	16조2,371억	8조7,729억
기타수익	0.9%	2.9%	0.2%	0.3%	0.3%	0.2%
	1조2,762억	1조437억	602억	967억	525억	231억

주) 2008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표2-29>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구성

구분	계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인건비	15.6%	8.1%	7.3%	22.1%	25.1%	33.4%
	17조2,467억	2조4,106억	2조3,244억	5조4,696억	3조1,279억	3조9,142억
운영비	25.8%	27.7%	15.9%	32.6%	29.6%	28.9%
	28조4,842억	8조2,548억	5조699억	8조809억	3조6,847억	3조3,939억
정부간 이전비용	31.8%	43.2%	67%	2.8%	1.7%	1.2%
	35조1,939억	12조8,557억	21조2,920억	6,930억	2,137억	1,395억
기타 이전비용	21.3%	14.7%	8.3%	33.1%	36.6%	31.5%
	23조5,288억	4조4,263억	2조6,390억	8조2,067억	4조5,586억	3조6,982억
기타비용	5.5%	6.3%	1.5%	9.4%	7.0%	5.0%
	6조470억	1조8,049억	4,647억	2조3,143억	8,754억	5,877억

주) 2008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3.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한 지자체의 재무보고서 분석 내용

3.1 재정상태 지표(총 9개 지표) 분석 결과

시·도의 경우 시·군·구에 비해 부채규모가 커서 총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부채상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① 자산과 부채의 구성 측면에서 보면, 시·도는 시·군·구에 비해 사무범위(지방행정체계의 특징) 및 평균공시지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 규모가 큰 구조이다.

② 시·도가 총량을 나타내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높고, 특히 도의 경우 총부채 중 차입부채 비중은 높은 반면 시·군에 융자하는 부분이 많아 실질부채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③ 부채상환능력 측면에서 보면 시·군·구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④ 순현금 유입 없이 보유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중이 시·군·구(평균391%)가 시·도(평균160%)에 비해 2.4배 정도 높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정자금을 통한 차입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은 시·군·구(평균 484%)가 시·도(평균 89%)에 비해 5.4배 높다.

3.2 재정운영 지표(총9개 지표) 분석 결과

시·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익이 상대적으로 많고, 시·군·구의 경우 각종 보조금, 보전금 등 의존수익이 많아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① 지출의 합리성 측면에서 볼 때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이월이 빈번한 시설투자 사업이 적은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지출계획성 및 사업활동의 적시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시·도에 비해 시·군·구의 시설투자 사업(사회기반시설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을 반증한

다.

② 수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수익구조의 자립성 및 채권의 회수능력에서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더욱 안정적이다.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지방세수익+세외수익) 비율은 시·도(평균 52%)가 시·군·구(평균 29%)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수익의 회수노력을 나타내는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은 시·도(평균 8.5%)가 시·군·구(평균 41%)에 비해 안정적이다.

3.3 회계책임 지표(총 11개 지표) 분석 결과

회계책임 지표는 인구수, 공무원수(직제수 등), 자산·부채·수익·비용규모의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① 주민 1인당 총자산·총부채 등은 자산·부채 규모보다는 주민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군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와 시·군이 통합된 형태이므로 타 시·도에 비해 자산·부채·수익·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② 군의 경우 주민 1인당 총비용(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주민 1인당 원가로 해석 가능)이 평균 261만원으로 최대인데, 이는 군의 주민수가 적어 1인당 배부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행정서비스의 고정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③ 공무원 1인당 총수익·총비용은 시·도가 세입규모 및 정부간 이전비용의 영향으로 시·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④ 공무원 1인당 급여는 소방서 등 관서가 포함되고, 고위공무원수 및 직제가 더 많은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재무분석지표에 관한 연구로는 박완규(1994), 박완규와 임성일(1999), 임성일(2001), 윤영진·임성일 및 원윤희(2003), 이효·이삼주 및 김유진(2004), 김갑순·이효 및 정영기(2007), 김갑순(2007), 박병희(2007), 임성일과 이효(2008), 김현(2008), 이주성(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첫째로 지방재정분석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유형 (박완규, 박완규와 임성일, 임성일), 둘째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의 재무비율지표를 원용, 수정하거나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분석지표를 개발하는 유형 (윤영진·임성일 및 원윤희, 이효·이삼주 및 김유진, 김갑순·이효 및 정영기, 김갑순), 셋째로 정부에서 사용중인 재정분석지표와 다른 인구·경제·재정변수들과 통계 및 계량적 수단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는 유형 (박병희, 임성일과 이효, 김현) 등으로 구분된다.

박완규(1994)는 지방재정측면을 반영하는 기존의 지표들에 대해 통상적인 분류기준에 따르지 않고 인자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몇 개의 인자를 찾아내어 기존 분류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연구하여 지방재정을 반영하는 3가지 인자요소를 추출, 지방재정의 각 측면을 반영하는 세 인자점수들의 시·지역간 평균은 동일한 반면 군·지역간에서는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을 밝혀내었다.

박완규와 임성일(1998)은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포함한 주요 지방재정관련 변수와 환경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인자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해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종합지표를 계산하고자 하였다. 방법으로 우선 재정자립도, 투자비비율, 채무현재액비율을 결합하여 종합지표를 산정하여 계산하였고, 인자분석에서 인자하중이 크게 나타난 5개 지표에 대해 인구수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재정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에서만 통계적으로 타당하였고, 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자치구의 경우 연도별 조건에 따라 재정자립도와 투자비비율의 경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일(2001)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재정분석, 진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지표관련 개선, 재정분석결과의 공개 및 방법 개선, 재정진단 대상단체의 선정에 있어서의 개선과 같은 현행 재정분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다른 재정제도와의 연계강화, 재정인센티브제도 활용, 재정분석 시기조정 및 상시체제구축, 재정통계 분석기반 개선 및 통계분석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선(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진단 관행 확산 등을 주장하였다.

윤영진·임성일 및 원윤희(2003)는 외국, 기업, 지방공기업의 재정분석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될 때 관련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재정분석의 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 결과 향후 분석대상으로서의 재무제표로서 세입세출결산서,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등을 예측하였고, 재무제표 분석모형과 대표지표식 분석모형에 대한 시안을 제시하였으며, 재정분석과정에서 전년도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비교기준과의 상대비교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효·이삼주 및 김유진(2004)은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자금수지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재정분석지표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등 재무제표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주성 부문은 현행 지표를 사용하고, 안전성·효율성·회계책임성·비용 및 성과 부문은 선행연구, 외국의 벤치마킹 및 지방자치단체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41개 지표를 선정, 그 중 산출정보에서 차이가 없는 중복지표를 제외하고 29개의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김갑순·이효 및 정영기(2007)는 현행 지방재정진단지표군 10개, 기업경영분석지표군 14개, 기타지표군 44개 총68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자금수지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재정분석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68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복식부기시스템에서의 생성가능성, 공공회계의 특성상 생성가능성, 타 지표와의 중복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총 28개의 지표를 최종 선

정하였다.

김갑순(2007)은 현행 지방재정진단지표군 25개(비계량지표제외), 기업경영분석 지표군 14개, 기타지표군 44개 총 83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하여 재정분석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83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정보의 이용가능성, 공공회계의 특성상 생성가능성, 타 지표와의 중복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총 13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재정분석체계에 대해서 '회계책임'이란 개념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효율성' 과 '비용 및 성과'의 개념간에도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대안으로 '회계책임'유형은 '노력성' 유형으로 수정하고, '효율성'유형은 '비용 및 성과'유형과 합쳐져 '생산성'유형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박병희(2007)는 지방재정분석제도에 의한 자치단체 재정평가가 자치단체 재정의 어떤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FY2006 지방재정분석 결과 나타난 자치단체 종합점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특징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면적, 재정지출 규모와 그에 덧붙여 기존의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에서 활용되던 재정관련 지표들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상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지표간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시행하였으며, 면적, 1인당 일반회계세출액, 투자비비율, 경상수지비율, 재정자립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재정분석 종합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시·군·구 공히 투자비비율이 높을수록 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점수가 높아지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분석 제도가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1인당 일반회계세출액 규모가 큰 시·군, 즉 인구대비 재정지출이 큰 자치단체가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관계를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주민 1인당 공공서비스가 많을수록 종합점수가 높아지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종합점수간의 관계는 군의 경우에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재정분석제도의 평가 방향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재정자립도와 종합점수가 음의 관계는 재정분석제도의 평가취지가 잘 발현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임성일과 이효(2008)는 새로운 복식부기 회계결산으로부터 생성되는 주요 재무

지표와 기존의 단식부기 재정지표를 객관적 시각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 비중 산출을 비롯하여 변이 계수를 통한 자치단체 유형별 편차분석, 그리고 산출된 재무비율지표와 주요 재정변수간의 상관성과 분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복식부기 회계정보는 현행 단식부기 결산정보와 연결되어 있으나 양 결산이 갖는 제도적인 면과 결산정보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양자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김현(2008)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징을 비교하고 주요 선진국 및 기업지표 사례를 참조하여 재정분석 목표가치 내지는 파악할 정보유형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재무제표 유형별 구성비와 증감추이를 나타내는 재정회계지표로 17개를 선정하고, 재정지표의 목표가치 관점에서 20개의 재정회계지표를 선정하여, 총37개 지표에 대해 핵심영역 및 목표가치, 국민관심사항으로 상호연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새로 개발된 29개의 재무분석지표를 가지고 연구한 이주성(2009)의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문들과는 다르게 분산분석을 통한 실증검증 단계를 밟았다.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분석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재무분석지표가 총자산규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7 회계연도 재무분석지표 비율자료를 중심으로 총자산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추가적으로 총자산규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산규모에 따라 재정상태비율, 재정운영비율, 회계책임비율 등 재무분석지표 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되었다. 자산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변수는 재정상태지표 9개중 1개와 재정운영지표 9개중 1개뿐이었다. 회계책임지표 11개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더구나 규모변수인 총자산과 각 재무분석지표비율과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주민수 대비 지방세수익, 공무원수 대비 총수익, 공무원수 대비 총비용 등 네 가지 재무분석지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0> 선행연구요약

저자 (연도)	제목	내용	결과
박완규 (1994)	지방재정 평가모형의 개발 및 활용	인자분석을 통해 고유인자 추출, 기존분류와의 일치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가지 인자요소를 추출해냄 ■ 시지역간평균 모두 동일 ■ 군지역간 모두 상이
박완규/ 임성일 (1998)	지방재정 진단지표에 관한 연구	인자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해 5개 대표지표 선정, 종합지표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경우재정자립도에서만 통계적으로 타당 ■ 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자치구의 경우 연도별조건에 따라 다름
임성일 (2001)	지방재정분석·측정의 실효성 확보방안	기존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여가지 방안 제시
윤영진/ 임성일/ 원윤희 (2003)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하에서의 재정분석모형	외국,기업의 사례를 토대로하여 새로운 제도하의 재정분석 틀을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분석모형과 대표지표식 분석모형에 대한 시안 제시
이효/ 이삼주/ 김유진 (2004)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지표 설정방안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전제로 새로운 재정분석지표 정립하고자 연구	5개 부문 29개의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
김갑순/ 이효/ 정영기 (2007)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정보를 이용한 지방재정분석지표의 개발	68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지표를 개발하고자 연구	28개의 지표를 최종 선정
김갑순 (2007)	복식부기차원에서 비방재정분석을 위한 지표개발	83개의지표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지표를 개발하고자 연구	13개의 지표를 최종 선정
박병희 (2007)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와 재정지표간 관계분석	지방재정분석제도에 의한 자치단체 재정평가가 자치단체 재정의 어떤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함	지방재정분석제도가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규명
임성일/ 이효 (2008)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결산정보와 현금주의 결산정보간의 비교분석	새로이 생성되는 재무지표와 기존의 재정지표를 비교분석	양자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힘
김현 (2008)	복식부기회계에 있어 중앙-지방간 재정회계지표의 불일치 조정방안	중앙과지방의 특징 비교 및 여러 사례를 참조하여 재정분석 목표가치 내지 파악할 정보유형을 설정하고자 함	37개 지표에 대해 핵심영역 및 목표가치, 국민관심사항으로 상호연계 종합표시
이주성 (2009)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자산 규모에 따른 복식부기회계 재무분석지표의 차이분석	총자산규모에 따라 재무분석지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29개의 지표중 2개를 제외하고는 자산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검증함

기존 연구(이주성의 연구는 제외)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복식부기 재정분석지표는 그동안 복식부기 회계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무제표 통계자료에 의한 실증분석 연구는 아니다. 주로 전통적으로 정립된 기업의 경영분석지표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거나,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지표들을 활용하여 이론적, 논리적 접근을 통해 개발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별·유형별로 재무분석지표 비율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다루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이주성(2009)의 실증분석 논문을 토대로 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및 재정자립도 따라 재무분석지표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재정자립도와 재무분석지표비율간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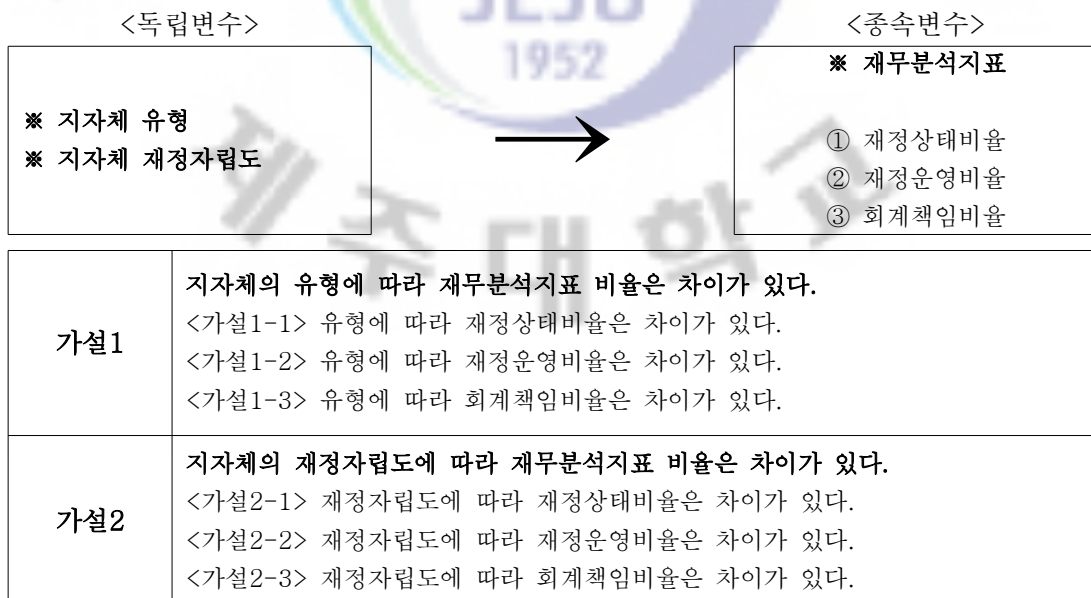
III. 연구 설계

제1절 연구가설 설정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연구가설 설정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무분석지표에 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통계자료에 의한 실증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역별·유형별 고려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다만 이주성(2009)의 논문에서는 새로 개발된 재무분석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규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성(2009)의 논문을 토대로 하여, 독립변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재정자립도로 하고, 종속변수를 재무분석지표 비율로 하여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상관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008년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적합한 재무분석지표를 개발하였다. 재정상태 재무분석지표 9개, 재정운영 재무분석지표 9개, 회계책임 재무분석지표 11개 등 3개 분야 총 29개의 재무분석지표 비율을 주요 변수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재무분석지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재무분석지표 비율은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단기 민간융자금 비율 등 9개 비율이다.

재정운영 재무분석지표 비율은 예산 대비 세출 비율,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재정자립도),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등 9개 비율이다.

회계책임 재무분석지표 비율은 주민 1인당 총자산, 주민 1인당 총부채, 주민 1인당 실질부채,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주민 1인당 총비용, 주민 1인당 기타이전비용, 공무원 1인당 총수익, 공무원 1인당 총비용, 공무원 1인당 급여 등 11개 비율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변수를 정리하면 <표3-1>와 같다.

<표3-1>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변수의 정의
재정상태지표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AA)	(총부채/총자산)×100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AB)	(차입부채/총부채)×100
	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AC)	[(총부채-기초단체융자액)/총부채]×100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AD)	(장단기금융상품/재정자금)×100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AE)	(현금창출자산 ¹⁾ /총부채)×100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AF)	(재정자금 ²⁾ /차입부채)×100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AG)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AH)	(미수세금 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 차감전 미수세금)×100
	총민간융자금 대비 단기민간융자금 비율(AI)	(단기민간융자금/총민간융자금)×100
재정운영지표	예산 대비 세출 비율(BA)	(세출액/예산액 ³⁾) ×100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BB)	(이자비용/경상비용) ⁴⁾ ×100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BC)	(이자비용/이자수익) ×100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BD)	(경상수익/총수익) ⁵⁾ ×100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BE)	(경상자체조달수익/총수익) ⁶⁾ ×100
	자체조달수익 대비 미수자체조달수익비율(BF)	(미수자체조달수익/자체조달수익) ⁷⁾ ×100
	세외수익 대비 미수세외수익 비율(BG)	(미수세외수익/세외수익) ⁸⁾ ×100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BH)	(경상비용/총비용) ×100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BI)	(자산취득액/지출액) ×100
회계책임지표	주민1인당 총자산(CA)	(총자산/회계연도말 인구수)
	주민1인당 총부채(CB)	(총부채/회계연도말 인구수)
	주민1인당 실질부채(CC)	(실질부채/회계연도말 인구수)
	주민1인당 총수익(CD)	(총수익/회계연도말 인구수)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CE)	(자체조달수익/회계연도말 인구수)
	주민1인당 지방세수익(CF)	(지방세수익/회계연도말 인구수)
	주민1인당 총비용(CG)	(총비용/회계연도말 인구수)
	주민1인당 기타이전비용(CH)	(기타이전비용/회계연도말 인구수)
	공무원1인당 총수익(CI)	(총수익/현원 공무원수)
	공무원1인당 총비용(CJ)	(총비용/현원 공무원수)
공무원1인당 급여(CK)	(급여/현원 공무원수)	

1) 현금창출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장단기 금융상품

3) 세출액 =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액 = 일반회계+특별회계

4) 이자비용 = 차입부채 이자비용,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진출금

5)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6)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

7) 미수자체조달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8)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험 운영하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2007년 1월부터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의거하여 직전연도 결산자료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매년 8월까지 각각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무분석지표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에 이용되는 표본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로 하였으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분석지표 비율 자료는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입각하여 작성한 2007년도 결산재무보고서를 취합하여 만든 재무분석지표 비율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정자립도 자료는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의 빈도분석을 통해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변수를 가지고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통계패키지인 SPSS 12.0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무분석지표비율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상관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관관계분석을 위한 재정자립도 자료는 재무운영지표비율 중 재정자립도를 의미하는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3-2>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집단분류

집단명	유형	표본수
1집단	특별시, 광역시	7
2집단	도	9
3집단	시	75
4집단	군	86
5집단	자치구	69
계		246

<표3-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집단분류

집단명	재정자립도 (%)	표본수
1집단	40.6 ~ 86.0	61
2집단	23.9 ~ 40.5	62
3집단	14.9 ~ 23.5	62
4집단	6.4 ~ 14.7	61
계		246

IV. 실증 분석

행정안전부에서 공시한 29개 재무분석지표 비율에 대하여 분석한 변수의 기술적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4-1>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명(단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AA	246	0.24	14.44	2.44	1.93
AB	246	.81	95.99	52.63	31.68
AC	246	35.00	100.00	98.48	8.20
AD	246	.05	99.97	67.77	21.49
AE	246	50.90	3748.58	651.57	603.39
AF	246	31.32	80519.91	4764.69	11069.331
AG	246	165.44	18676.07	2164.16	1901.71
AH	246	-6.26	68.82	15.38	9.02
AI	246	-1.10	100.00	34.76	28.44
BA	246	47.76	95.41	75.71	8.35
BB	246	.00	5.05	.95	1.01
BC	246	.00	265.49	23.46	31.43
BD	246	20.41	87.17	63.48	9.85
BE	246	5.45	77.62	24.96	15.83
BF	246	3.26	106.73	24.80	20.41
BG	246	1.27	177.82	42.33	36.71
BH	246	26.72	83.78	56.38	9.42
BI	246	5.15	83.10	28.82	13.26
CA	246	1612	67069	15239.71	11487.67
CB	246	31	1901	311.41	282.35
CC	246	31	1901	305.42	280.45
CD	246	397	9899	2611.06	1964.25
CE	246	103	1669	577.06	320.78
CF	246	34	1043	313.42	194.45
CG	246	365	6787	1759.95	1215.53
CH	246	35	2046	586.60	439.05
CI	246	156249	1216131	371535.17	163080.42
CJ	246	141298	1143324	270076.20	145645.96
CK	246	36773	53791	43705.48	2789.51
유효수(목록별)	246				

제1절 가설1의 검증

1. 가설 1-1의 검증: 지자체 유형에 따른 재정상태비율과의 차이검증

가설1-1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재정상태비율은 차이가 있다’로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SPSS 12.0의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차이를 검증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AH)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기타 모든 재정상태비율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서 재정상태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1-1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4-2>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재정상태지표 분산분석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AA)	집단-간	301.837	4	75.459	29.881	.000
	집단-내	608.604	241	2.525		
	합계	910.442	245			
총부채대비 차입부채비율(AB)	집단-간	131010.030	4	32752.508	68.696	.000
	집단-내	114902.266	241	476.773		
	합계	245912.296	245			
총부채대비 실질부채비율(AC)	집단-간	14694.390	4	3673.597	494.521	.000
	집단-내	1790.291	241	7.429		
	합계	16484.680	245			
재정자금대비 금융상품비율(AD)	집단-간	14537.452	4	3634.363	8.879	.000
	집단-내	98641.945	241	409.303		
	합계	113179.397	245			
총부채대비 현금창출자산비율(AE)	집단-간	14066771	4	3516692.7	11.280	.000
	집단-내	75131741	241	311749.961		
	합계	89198512	245			
차입부채대비 재정자금비율(AF)	집단-간	2603683911.745	4	650920978	5.722	.000
	집단-내	27416088923.687	241	113759705		
	합계	30019772835.432	245			
유동부채대비 유동자산비율(AG)	집단-간	55617442	4	13904361	4.035	.003
	집단-내	830422745	241	3445737.5		
	합계	886040188	245			

미수세금대비 대손충당금비율(AH)	집단-간	1004.812	4	251.203	3.198	.014
	집단-내	18929.938	241	78.547		
	합계	19934.750	245			
총민간융자금대비 단기민간융자금비율(AI)	집단-간	11383.247	4	2845.812	3.671	.006
	집단-내	186804.847	241	775.124		
	합계	198188.094	245			

<표4-3>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비율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평균

변수	유형	N	평균(%)	변수	유형	N	평균(%)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 (AA)	1	7	6.25	차입부채대비 재정자금비율 (AF)	1	7	98.75
	2	9	6.06		2	9	97.02
	3	75	2.91		3	75	1017.25
	4	86	1.62		4	86	5647.01
	5	69	2.08		5	69	8820.47
	합계	246	2.44		합계	246	4764.69
총부채대비 차입부채비율 (AB)	1	7	86.19	유동부채대비 유동자산비율 (AG)	1	7	963.51
	2	9	89.44		2	9	520.36
	3	75	69.48		3	75	2023.82
	4	86	59.63		4	86	2635.02
	5	69	17.43		5	69	2066.06
	합계	246	52.63		합계	246	2164.16
총부채대비 실질부채비율 (AC)	1	7	99.52	미수세금대비 대손충당금비율 (AH)	1	7	18.12
	2	9	58.82		2	9	15.60
	3	75	100.00		3	75	14.09
	4	86	100.00		4	86	13.85
	5	69	100.00		5	69	18.39
	합계	246	98.48		합계	246	15.38
재정자금대비 금융상품비율 (AD)	1	7	51.99	총민간융자금대비단 기민간융자금비율 (AI)	1	7	11.73
	2	9	61.40		2	9	7.77
	3	75	71.72		3	75	36.97
	4	86	74.72		4	86	34.90
	5	69	59.52		5	69	38.05
	합계	246	67.77		합계	246	34.76
총부채대비 현금창출자산비율 (AE)	1	7	162.64				
	2	9	162.73				
	3	75	500.22				
	4	86	953.73				
	5	69	552.82				
	합계	246	651.57				

주) 유형1: 특·광역시, 유형2: 도, 유형3: 시, 유형4: 군, 유형5: 자치구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평균도표 <표4-3>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인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AA)의 전체 평균은 2.44%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6.25%, 6.06%, 2.91%, 1.62%, 2.08% 로 1집단 특·광역시와 2집단 도의 경우 도로, 도시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차입금이나 많은 채권 발행액으로 인해 높은 비율을 보여줬다.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AB)의 전체 평균은 52.63%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86.19%, 89.44%, 69.45%, 59.63%, 17.43%로 5집단 자치구의 경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인 장기차입부채가 타 집단에 비해 적으므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집단은 평균을 웃도는 비율을 보여줬다. 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AC)의 전체 평균은 98.48%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99.52%, 58.82%, 100.00%, 100.00%, 100.00% 로 2집단 도를 제외한 기타 집단은 대동소이하게 평균 이상을 보였다.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AD)의 전체 평균은 67.77%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51.99%, 61.40%, 71.47%, 67.77%, 57.52% 로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는 있지만 특징적인 추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AE)의 전체 평균은 651.57%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162.64%, 162.73%, 500.22%, 953.73%, 552.82% 로 1집단 특·광역시와 2집단 도의 경우 공공채인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낮은 비율을 보여줬다.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AF)의 전체 평균은 4764.69%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98.75%, 97.02%, 1017.25%, 5647.01%, 8820.46% 로 나타났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AG)의 전체 평균은 2164.16%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963.51%, 520.36%, 2023.82%, 2635.02%, 2066.06% 로 나타났다.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AH)의 전체 평균은 15.38%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18.12%, 15.60%, 14.09%, 13.85%, 18.39% 로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는 있으나 특징적인 추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민간융자금 대비 단기민간융자금 비율(AI)의 전체 평균은 34.76%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11.73%, 7.77%, 36.97%, 34.90%, 38.05% 로 나타났다.

2. 가설1-2의 검증: 지자체 유형에 따른 재정운영비율과의 차이검증

가설1-2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재정운영비율은 차이가 있다’로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SPSS 12.0의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차이를 검증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재정운영비율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서 재정운영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1-2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4-4>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재정운영지표 분산분석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예산대비 세출비율(BA)	집단-간	7346.523	4	1836.631	45.415	.000
	집단-내	9746.266	241	40.441		
	합계	17092.790	245			
경상비용대비 이자비용비율(BB)	집단-간	121.404	4	30.351	56.981	.000
	집단-내	128.370	241	.533		
	합계	249.774	245			
이자수익대비 이자비용비율(BC)	집단-간	122999.534	4	30749.883	62.235	.000
	집단-내	119075.631	241	494.090		
	합계	242075.165	245			
총수익대비 경상수익비율(BD)	집단-간	7219.875	4	1804.969	26.306	.000
	집단-내	16535.833	241	68.613		
	합계	23755.707	245			
총수익대비 경상자제조달수익비율(BE)	집단-간	24698.611	4	6174.653	40.519	.000
	집단-내	36725.915	241	152.390		
	합계	61424.526	245			
자체조달수익대비 미수자체조달수익비율(BF)	집단-간	69633.180	4	17408.295	129.288	.000
	집단-내	32450.122	241	134.648		
	합계	102083.302	245			
세외수익대비 미수세외수익비율(BG)	집단-간	211903.278	4	52975.820	108.001	.000
	집단-내	118213.246	241	490.511		
	합계	330116.524	245			
총비용대비 경상비용비율(BH)	집단-간	4775.562	4	1193.891	16.948	.000
	집단-내	16977.454	241	70.446		
	합계	21753.016	245			
지출액대비 자산취득비율(BI)	집단-간	26141.190	4	6535.298	93.075	.000
	집단-내	16921.950	241	70.216		
	합계	43063.140	245			

<표4-5>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비율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평균

변수	유형	N	평균(%)	변수	유형	N	평균(%)
예산대비 세출비율 (BA)	1	7	86.03	자체조달수익대비 수자체조달수익비율 (BF)	1	7	9.30
	2	9	90.94		2	9	6.07
	3	75	72.55		3	75	18.29
	4	86	71.48		4	86	12.13
	5	69	81.39		5	69	51.30
	합계	246	75.71		합계	246	24.80
경상비용대비 이자비용비율 (BB)	1	7	3.32	세외수익대비 미수세외수익비율 (BG)	1	7	13.91
	2	9	2.38		2	9	9.96
	3	75	1.49		3	75	31.57
	4	86	0.75		4	86	20.40
	5	69	0.20		5	69	88.45
	합계	246	0.95		합계	246	42.33
이자수익대비 이자비용비율 (BC)	1	7	141.28	총비용대비 경상비용비율 (BH)	1	7	58.87
	2	9	48.36		2	9	38.19
	3	75	30.66		3	75	55.22
	4	86	13.74		4	86	55.28
	5	69	12.54		5	69	61.12
	합계	246	23.46		합계	246	56.38
총수익대비 경상수익비율 (BD)	1	7	70.56	지출액대비 자산취득비율 (BI)	1	7	25.97
	2	9	49.18		2	9	16.03
	3	75	69.28		3	75	34.80
	4	86	64.14		4	86	37.29
	5	69	57.50		5	69	13.71
	합계	246	63.48		합계	246	28.82
총수익대비 경상자체 조달수익비율 (BE)	1	7	60.20				
	2	9	30.17				
	3	75	33.67				
	4	86	14.14				
	5	69	24.71				
	합계	246	24.96				

주) 유형1: 특·광역시, 유형2: 도, 유형3: 시, 유형4: 군, 유형5: 자치구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평균도표 <표4-5>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산 대비 세출 비율(BA)의 전체 평균은 75.71%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86.03%, 90.94%, 72.55%, 71.48%, 81.39%로 나타나 특징적인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BB)의 전체 평균은 0.95%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3.32%, 2.38%, 1.49%, 0.75%, 0.20%로 부채비율이 높은 1집단과 2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BC)의 전체 평균은 23.46%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141.28%, 48.36%, 30.66%, 13.74%, 12.54%로 나타났다. 이자비용은 차입부채에 대한 이자이므로 차입부채가 많은 1집단

특·광역시, 2집단 도의 경우 높은 비율을 보여줬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BD)의 전체 평균은 63.48%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70.56%, 49.18%, 69.28%, 64.14%, 57.50%로 집단간 차이는 있지만 특징적인 추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BE)의 전체 평균은 24.96%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60.20%, 30.17%, 33.67%, 14.14%, 24.71%로 나타났다. 자체조달수익 대비 미수자체조달수익 비율(BF)의 전체 평균은 24.80%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9.30%, 6.07%, 18.29%, 12.43%, 51.30%로 나타났다. 세외수익 대비 미수세외수익 비율(BG)의 전체 평균은 42.33%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13.91%, 9.96%, 31.57%, 20.40%, 88.45%로 나타났다.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BH)의 전체 평균은 56.38%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58.87%, 38.19%, 55.22%, 55.28%, 61.12%로 모든 집단이 평균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특징적인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BI)의 전체 평균은 28.82%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25.97%, 16.03%, 34.80%, 37.29%, 13.71%로 나타났다.

3. 가설1-3의 검증: 지자체 유형에 따른 회계책임비율과의 차이검증

가설1-3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회계책임비율은 차이가 있다’로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SPSS 12.0의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차이를 검증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회계책임비율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서 회계책임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1-3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4-6>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회계책임지표 분산분석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주민1인당 총자산(CA)	집단-간	20087735943.636	4	5021933985.91	98.847	.000
	집단-내	12244067163.291	241	50805257.939		
	합계	32331803106.927	245			
주민1인당 총부채(CB)	집단-간	5737118.936	4	1434279.734	25.059	.000
	집단-내	13793930.413	241	57236.226		
	합계	19531049.350	245			
주민1인당 실질부채(CC)	집단-간	5646963.619	4	1411740.905	24.974	.000
	집단-내	13623358.413	241	56528.458		
	합계	19270322.033	245			
주민1인당 총수익(CD)	집단-간	686948235.120	4	1717377058.780	160.214	.000
	집단-내	258332850.083	241	1071920.540		
	합계	945281085.203	245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CE)	집단-간	11214734.681	4	2803683.670	48.277	.000
	집단-내	13996063.405	241	58074.952		
	합계	25210798.085	245			
주민1인당 지방세수익(CF)	집단-간	4457550.428	4	1114387.607	55.876	.000
	집단-내	4806477.446	241	19943.890		
	합계	9264027.874	245			
주민1인당 총비용(CG)	집단-간	243139257.505	4	60784814.376	123.258	.000
	집단-내	118848977.910	241	493149.286		
	합계	361988235.415	245			
주민1인당 기타이전비용(CH)	집단-간	33832157.061	4	8458039.265	152.164	.000
	집단-내	13396029.899	241	55585.186		
	합계	47228186.959	245			
공무원1인당 총수익(CI)	집단-간	5244180838742.130	4	1311045209685.553	248.466	.000
	집단-내	1271648527699.351	241	5276549907.47		
	합계	6515829366441.480	245			
공무원1인당 총비용(CJ)	집단-간	5329251438575.537	4	1082312859643.884	300.548	.000
	집단-내	867871281191.703	241	3601125648.10		
	합계	5197122719767.230	245			
공무원1인당 급여(CK)	집단-간	572444521.091	4	143111130.273	25.855	.000
	집단-내	1333985520.308	241	5535209.628		
	합계	1906430041.398	245			

<표4-7>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비율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평균

변수	유형	N	평균(천원)	변수	유형	N	평균(천원)
주민1인당 총자산 (CA)	1	7	9964.71	주민1인당 총비용 (CG)	1	7	1268.71
	2	9	8414.56		2	9	1517.89
	3	75	14086.80		3	75	1434.12
	4	86	26389.24		4	86	3038.15
	5	69	4021.72		5	69	602.41
	합계	246	15239.71		합계	246	1759.95
주민1인당 총부채 (CB)	1	7	609.43	주민1인당 기타이전비용 (CH)	1	7	194.00
	2	9	416.00		2	9	191.78
	3	75	390.93		3	75	481.59
	4	86	397.66		4	86	1067.02
	5	69	73.58		5	69	193.29
	합계	246	311.41		합계	246	589.60
주민1인당 실질부채 (CC)	1	7	606.57	공무원1인당 총수익 (CI)	1	7	796709.43
	2	9	254.67		2	9	896951.89
	3	75	390.93		3	75	399553.15
	4	86	397.66		4	86	373216.65
	5	69	73.58		5	69	227318.87
	합계	246	305.42		합계	246	371535.17
주민1인당 총수익 (CD)	1	7	1541.00	공무원1인당 총비용 (CJ)	1	7	659273.43
	2	9	1746.78		2	9	823347.44
	3	75	2071.61		3	75	276680.96
	4	86	4776.93		4	86	237137.05
	5	69	713.20		5	69	192302.12
	합계	246	2611.06		합계	246	270076.20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CE)	1	7	1048.86	공무원1인당 급여 (CK)	1	7	47680.57
	2	9	519.33		2	9	50269.11
	3	75	719.85		3	75	43693.45
	4	86	679.31		4	86	43520.20
	5	69	254.07		5	69	42690.09
	합계	246	577.06		합계	246	43705.48
주민1인당 지방세수익 (CF)	1	7	710.71				
	2	9	413.89				
	3	75	404.99				
	4	86	344.88				
	5	69	121.26				
	합계	246	313.42				

주) 유형1: 특·광역시, 유형2: 도, 유형3: 시, 유형4: 군, 유형5: 자치구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평균도표 <표4-7>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1인당 총자산(CA)의 전체 평균은 15,240천원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9,965천원, 8,415천원, 14,087천원, 26,389천원, 4,022천원으로 나타났다. 주민1인당

총부채(CB)의 전체 평균은 311천원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609천원, 416천원, 391천원, 398천원, 74천원으로 나타났다. 주민1인당 실질부채(CC)의 전체 평균은 305천원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607천원, 255천원, 391천원, 398천원, 74천원으로 나타났다. 주민1인당 총수익(CD)의 전체 평균은 2,611천원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1,541천원, 1,747천원, 2,072천원, 4,777천원, 719천원으로 나타난다.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CE)의 전체 평균은 577천원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1,049천원, 519천원, 720천원, 679천원, 254천원으로 나타났다. 주민1인당 지방세수익(CF)의 전체 평균은 313천원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711천원, 414천원, 405천원, 345천원, 121천원으로 나타났다. 주민1인당 총비용(CG)의 전체 평균은 1,760천원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1,269천원, 1,518천원, 1,434천원, 3,038천원, 602천원으로 나타났다. 주민1인당 기타이전비용(CH)의 전체 평균은 587천원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194천원, 192천원, 482천원, 1,067천원, 193천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1인당 총수익(CI)의 전체 평균은 371,535천원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796,709천원, 896,952천원, 399,553천원, 373,217천원, 227,319천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1인당 총비용(CJ)의 전체 평균은 270,076천원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659,273천원, 823,347천원, 276,681천원, 237,137천원, 192,302천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1인당 급여(CK)의 전체 평균은 43,705천원이다. 집단유형별로 살펴보면 47,681천원, 502,693천원, 43,693천원, 53,520천원, 42,690천원으로 나타났다.

제2절 가설2의 검증

1. 가설 2-1의 검증: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상태비율과의 차이검증

가설2-1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정상태비율은 차이가 있다’로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SPSS 12.0의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차이를 검증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비율 총 9개의 지표 중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AA),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AE)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AH)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재정상태비율 총 9개의 지표 중 AA, AE, AH 를 제외한 6개의 지표는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상태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2-1은 재정상태비율 총 9개의 지표 중에서 3개만 채택되었다.

<표4-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상태지표 분산분석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AA)	집단-간	55.452	3	18.484	5.232	.002
	집단-내	854.989	242	3.533		
	합계	910.442	245			
총부채대비 차입부채비율(AB)	집단-간	7134.846	3	2378.282	2.410	.068
	집단-내	238777.450	242	986.684		
	합계	245912.296	245			
총부채대비 실질부채비율(AC)	집단-간	114.067	3	38.022	.562	.641
	집단-내	16370.613	242	67.647		
	합계	16484.680	245			
재정자금대비 금융상품비율(AD)	집단-간	1355.369	3	451.790	.978	.404
	집단-내	111824.028	242	462.083		
	합계	113179.397	245			
총부채대비 현금창출자산비율(AE)	집단-간	6379034.132	3	2126344.7	6.213	.000
	집단-내	82819477.463	242	342229.246		
	합계	89198512.595	245			
차입부채대비 재정자금비율(AF)	집단-간	856999910.4	3	285666637	2.371	.071
	집단-내	29162772925	242	120507326		
	합계	30019772835	245			
유동부채대비 유동자산비율(AG)	집단-간	24537632.972	3	8179211.0	2.298	.078
	집단-내	861502554.9	242	3559927.9		
	합계	886040187.9	245			

미수세금대비 대손충당금비율(AH)	집단-간	866.652	3	288.884	3.666	.013
	집단-내	19068.098	242	78.794		
	합계	19934.750	245			
총민간용자금대비 단기민간용자금비율(AI)	집단-간	1355.774	3	451.925	.556	.645
	집단-내	196832.320	242	813.357		
	합계	198188.094	245			

<표4-9>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비율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평균

변수	집단	N	평균(%)	변수	집단	N	평균(%)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 (AA)	1	61	3.03	미수세금대비 대손충당금비율 (AH)	1	61	18.05
	2	62	2.64		2	62	16.19
	3	62	2.37		3	62	14.11
	4	61	1.72		4	61	13.19
	합계	246	2.43		합계	246	15.38
총부채대비 현금창출자산비율 (AE)	1	61	640.43				
	2	62	507.20				
	3	62	543.85				
	4	61	918.92				
	합계	246	651.57				

주)집단1: 재정자립도 40.6-86.0%, 집단2: 재정자립도 23.9-40.5%, 집단3: 재정자립도 14.9-23.5%, 집단4: 재정자립도 6.4-14.7%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평균도표 <표4-9>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AA)의 전체 평균은 2.43%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3.03%, 2.64%, 2.37%, 1.72%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부채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AE)의 전체 평균은 651.57%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640.43%, 507.20%, 543.85%, 918.92%로 나타났다.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AH)의 전체 평균은 15.38%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18.05%, 16.19%, 14.11%, 13.19%로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는 있지만 특징적인 추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상태비율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모든 비율이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4-10>은 상관계수를 구한 자료이다.

<표4-10>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재정상태비율과의 상관계수

		재정자립도	AA			재정자립도	AB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318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50
	유의확률(양쪽)		.000		유의확률(양쪽)		.433
	N	246	246		N	246	246
AA	Pearson(상관계수)	.318	1	AB	Pearson(상관계수)	.050	1
	유의확률(양쪽)	.000			유의확률(양쪽)	.433	
	N	246	246		N	246	246

		재정자립도	AC			재정자립도	AD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49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01
	유의확률(양쪽)		.440		유의확률(양쪽)		.991
	N	246	246		N	246	246
AC	Pearson(상관계수)	-.049	1	AD	Pearson(상관계수)	.001	1
	유의확률(양쪽)	.440			유의확률(양쪽)	.991	
	N	246	246		N	246	246

		재정자립도	AE			재정자립도	AF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106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84
	유의확률(양쪽)		.097		유의확률(양쪽)		.188
	N	246	246		N	246	246
AE	Pearson(상관계수)	-.106	1	AF	Pearson(상관계수)	.084	1
	유의확률(양쪽)	.097			유의확률(양쪽)	.188	
	N	246	246		N	246	246

		재정자립도	AG			재정자립도	AH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27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41
	유의확률(양쪽)		.677		유의확률(양쪽)		.527
	N	246	246		N	246	246
AG	Pearson(상관계수)	-.027	1	AH	Pearson(상관계수)	.041	1
	유의확률(양쪽)	.677			유의확률(양쪽)	.527	
	N	246	246		N	246	246

		재정자립도	AI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103
	유의확률(양쪽)		.106
	N	246	246
AI	Pearson(상관계수)	-.103	1
	유의확률(양쪽)	.106	
	N	246	246

주) AA: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AB: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AC: 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 AD: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AE: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AF: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AG: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AH: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AI: 총민간융자금 대비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2. 가설 2-2의 검증: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운영비율과의 차이검증

가설2-2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정운영비율은 차이가 있다’로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SPSS 12.0의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차이를 검증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BB)을 제외한 모든 재정운영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예산 대비 세출 비율(BA)과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BC)의 경우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기타 나머지 비율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운영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2-2는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외하고는 채택되었다.

<표4-1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운영지표 분산분석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예산대비 세출비율(BA)	집단-간	578.662	3	192.887	2.827	.039
	집단-내	16514.127	242	68.240		
	합계	17092.790	245			
경상비용대비 이자비용비율(BB)	집단-간	7.152	3	2.384	2.378	.070
	집단-내	242.622	242	1.003		
	합계	249.774	245			
이자수익대비 이자비용비율(BC)	집단-간	8228.482	3	2742.827	2.838	.039
	집단-내	233846.683	242	966.309		
	합계	242075.165	245			
총수익대비 경상수익비율(BD)	집단-간	2862.715	3	954.238	11.053	.000
	집단-내	20892.993	242	86.335		
	합계	23755.707	245			
총수익대비 경상자제조달수익비율(BE)	집단-간	42982.526	3	14327.509	188.009	.000
	집단-내	18442.000	242	76.207		
	합계	61424.526	245			
자체조달수익대비 미수자체조달수익비율(BF)	집단-간	8141.191	3	2713.730	6.991	.000
	집단-내	93942.111	242	388.191		
	합계	102083.302	245			
세외수익대비 미수세외수익비율(BG)	집단-간	32469.957	3	10823.319	8.800	.000
	집단-내	297646.568	242	1229.944		
	합계	330116.524	245			
총비용대비 경상비용비율(BH)	집단-간	1834.899	3	611.633	7.431	.000
	집단-내	19918.117	242	82.306		
	합계	21753.016	245			
지출액대비 자산취득비율(BI)	집단-간	4587.504	3	1529.168	9.618	.000
	집단-내	38475.637	242	158.990		
	합계	43063.140	245			

<표4-1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비율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평균

변수	유형	N	평균(%)	변수	유형	N	평균(%)
예산대비 세출비율 (BA)	1	61	75.77	자체조달수익대비 미수자체조달수익비율 (BF)	1	61	24.44
	2	62	76.17		2	62	30.04
	3	62	77.56		3	62	29.07
	4	61	73.30		4	61	15.48
	합계	246	75.71		합계	246	24.80
이자수익대비 이자비용비율 (BC)	1	61	32.81	세외수익대비 미수세외수익비율 (BG)	1	61	45.41
	2	62	22.90		2	62	53.10
	3	62	21.15		3	62	47.61
	4	61	17.01		4	61	22.92
	합계	246	23.46		합계	246	42.33
총수익대비 경상수익비율 (BD)	1	61	69.33	총비용대비 경상비용비율 (BH)	1	61	60.60
	2	62	62.31		2	62	56.90
	3	62	60.60		3	62	53.42
	4	61	61.76		4	61	54.63
	합계	246	63.48		합계	246	56.38
총수익대비 경상자체 조달수익비율 (BE)	1	61	45.64	지출액대비 자산취득비율 (BI)	1	61	28.18
	2	62	26.47		2	62	23.32
	3	62	17.71		3	62	28.42
	4	61	10.09		4	61	35.44
	합계	246	24.96		합계	246	28.82

주)집단1: 재정자립도 40.6-86.0%, 집단2: 재정자립도 23.9-40.5%, 집단3: 재정자립도 14.9-23.5%, 집단4: 재정자립도 6.4-14.7%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평균도표 <표4-12>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산 대비 세출 비율(BA)의 전체 평균은 75.71%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75.77%, 76.17%, 77.56%, 73.30%로 나타나 특징적인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이자 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BC)의 전체 평균은 23.46%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32.81%, 22.90%, 21.15%, 17.01%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BD)의 전체 평균은 64.48%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69.33%, 62.31%, 60.60%, 61.76%로 나타나 특징적인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BE)의 전체 평균은 24.96%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45.64%, 26.47%, 17.71%, 10.09%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자체조달수익 대비 미수자체조달수익 비율(BF)의 전체 평균은 24.80%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24.44%, 30.04%, 29.07%, 15.48%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는 있으나 특징적인 추세는 보이지 않았

다. 세외수익 대비 미수세외수익(BG)의 전체 평균은 42.33%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45.41%, 53.10%, 47.61%, 22.92%로 나타나 특징적인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BH)의 전체 평균은 56.38%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60.60%, 56.90%, 53.42%, 54.63%로 나타나 특징적인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BI)의 전체 평균은 28.82%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28.18%, 23.32%, 28.42%, 35.44%로 나타나 특징적인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운영비율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BD)만이 0.415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비율은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4-13>은 상관계수를 구한 자료이다.

<표4-1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재정운영비율과의 상관계수

		재정자립도	BA			재정자립도	BB
재정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07	재정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310
	유의확률(양쪽)		.919		유의확률(양쪽)		.000
	N	246	246		N	246	246
BA	Pearson(상관계수)	.007	1	BB	Pearson(상관계수)	.310	1
	유의확률(양쪽)	.919			유의확률(양쪽)	.000	
	N	246	246		N	246	246
		재정자립도	BC			재정자립도	BD
재정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303	재정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415
	유의확률(양쪽)		.000		유의확률(양쪽)		.000
	N	246	246		N	246	246
BC	Pearson(상관계수)	.303	1	BD	Pearson(상관계수)	.415	1
	유의확률(양쪽)	.000			유의확률(양쪽)	.000	
	N	246	246		N	246	246
		재정자립도	BF			재정자립도	BG
재정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80	재정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05
	유의확률(양쪽)		.209		유의확률(양쪽)		.939
	N	246	246		N	246	246
BF	Pearson(상관계수)	-.080	1	BG	Pearson(상관계수)	.005	1
	유의확률(양쪽)	.209			유의확률(양쪽)	.939	
	N	246	246		N	246	246

		재정자립도	BH			재정자립도	BI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168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91
	유의확률(양쪽)		.008		유의확률(양쪽)		.155
	N	246	246		N	246	246
BH	Pearson(상관계수)	.168	1	BI	Pearson(상관계수)	-.091	1
	유의확률(양쪽)	.008			유의확률(양쪽)	.155	
	N	246	246		N	246	246

주) BA: 예산 대비 세출 비율, BB: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BC: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BD: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BF: 자체조달수익 대비 미수자체조달수익 비율, BG: 세외수익 대비 미수세외수익 비율, BH: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BI: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3. 가설 2-3의 검증: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회계책임비율과의 차이검증

가설2-3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회계책임비율은 차이가 있다’로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SPSS 12.0의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차이를 검증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1인당 급여(CK)를 제외한 모든 회계책임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주민1인당 총부채(CB), 주민1인당 실질부채(CC), 공무원1인당 총수익(CI) 및 공무원1인당 총비용(CJ)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주민1인당 총자산(CA), 주민1인당 총수익(CD),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CE), 주민1인당 지방세수익(CF), 주민1인당 총비용(CG) 및 주민1인당 기타이전비용(CH)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회계책임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2-3은 공무원1인당 급여(CK)를 제외하고는 채택되었다.

<표4-14>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회계책임지표 분산분석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주민1인당 총자산(CA)	집단-간	11783591637.869	3	3927863879.290	46.259	.000
	집단-내	20548211469.058	242	84909964.748		
	합계	32331803106.927	245			
주민1인당 총부채(CB)	집단-간	805711.676	3	268570.559	3.471	.017
	집단-내	18725337.674	242	77377.428		
	합계	19531049.350	245			
주민1인당 실질부채(CC)	집단-간	861413.712	3	287137.904	3.775	.011
	집단-내	18408908.320	242	76069.869		
	합계	19270322.033	245			
주민1인당 총수익(CD)	집단-간	488657138.928	3	162885712.976	86.326	.000
	집단-내	456623946.276	242	1886875.811		
	합계	945281085.203	245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CE)	집단-간	2239522.992	3	746507.664	7.864	.000
	집단-내	22971275.094	242	94922.624		
	합계	25210798.085	245			
주민1인당 지방세수익(CF)	집단-간	1461083.300	3	487027.767	15.105	.000
	집단-내	7802944.574	242	32242.573		
	합계	9264027.874	245			
주민1인당 총비용(CG)	집단-간	176125774.417	3	58708591.472	76.441	.000
	집단-내	185862460.998	242	768026.698		
	합계	361988235.415	245			
주민1인당 기타이전비용(CH)	집단-간	24945474.411	3	8315158.137	90.306	.000
	집단-내	22282712.548	242	92077.325		
	합계	47228186.959	245			
공무원1인당 총수익(CI)	집단-간	291699174865.844	3	97233058288.615	3.781	.011
	집단-내	6224130191575.630	242	25719546246.180		
	합계	6515829366441.480	245			
공무원1인당 총비용(CJ)	집단-간	197068733467.014	3	65689577822.338	3.179	.025
	집단-내	5000053986300.220	242	20661380108.679		
	합계	5197122719767.240	245			
공무원1인당 급여(CK)	집단-간	22598878.996	3	7532959.665	.968	.409
	집단-내	1883831162.402	242	7784426.291		
	합계	1906430041.398	245			

<표4-15>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비율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평균

변수	유형	N	평균(천원)	변수	유형	N	평균(천원)
주민1인당 총자산 (CA)	1	61	9769.93	주민1인당 지방세수익 (CF)	1	61	443.74
	2	62	9525.92		2	62	300.29
	3	62	15114.74		3	62	253.44
	4	61	26643.95		4	61	257.41
	합계	246	15239.71		합계	246	313.42
주민1인당 총부채 (CB)	1	61	282.41	주민1인당 총비용 (CG)	1	61	972.66
	2	62	258.95		2	62	1195.42
	3	62	297.18		3	62	1727.82
	4	61	408.18		4	61	3153.69
	합계	246	311.41		합계	246	1759.95

주민1인당 실질부채 (CC)	1	61	280.23	주민1인당 기타이전비용 (CH)	1	61	256.48
	2	62	247.55		2	62	398.65
	3	62	290.42		3	62	593.84
	4	61	404.69		4	61	1100.41
	합계	246	305.42		합계	246	586.60
주민1인당 총수익 (CD)	1	61	1346.79	공무원1인당 총수익 (CI)	1	61	427689.92
	2	62	1667.89		2	62	347414.60
	3	62	2492.02		3	62	339599.82
	4	61	4954.95		4	61	372355.31
	합계	246	2611.06		합계	246	371535.17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CE)	1	61	739.67	공무원1인당 총비용 (CJ)	1	61	317904.23
	2	62	523.94		2	62	263431.82
	3	62	495.68		3	62	255185.31
	4	61	551.16		4	61	244136.48
	합계	246	577.06		합계	246	270076.20

주)집단1: 재정자립도 40.6-86.0%, 집단2: 재정자립도 23.9-40.5%, 집단3: 재정자립도 14.9-23.5%, 집단4: 재정자립도 6.4-14.7%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평균도표 <표4-15>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 1인당 총자산(CA)의 전체 평균은 15,240천원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9,770천원, 9,526천원, 15,115천원, 26,644천원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1집단, 2집단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3집단, 4집단이 주민 1인당 총자산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 1인당 총부채(CB)의 전체 평균은 311천원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282천원, 259천원, 297천원, 408천원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4집단의 주민 1인당 총부채가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특징적인 추세가 보이지 않았다. 주민 1인당 실질부채(CC)의 전체 평균은 305천원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280천원, 248천원, 290천원, 405천원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4집단을 제외하고는 특징적인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주민 1인당 총수익(CD)의 전체 평균은 2611천원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1,347천원, 1,668천원, 2,492천원, 4,955천원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민 1인당 총수익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CE)의 전체 평균은 577천원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740천원, 524천원, 496천원, 551천원으로 나타나 특징적인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CF)의 전체 평균은 313천원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444천원, 300천원, 253천원, 257천원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주민 1인당 총비용(CG)의 전체 평균은 1,760천원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973천원, 1,195천원, 1,728천원, 3,154천원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높

을수록 주민 1인당 총비용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주민 1인당 기타이전비용(CH)의 전체 평균은 587천원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256천원, 399천원, 594천원, 1,100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민 1인당 기타이전비용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공무원 1인당 총수익(CI)의 전체 평균은 371,535천원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427,690천원, 347,415천원, 339,560천원, 372,355천원으로 특징적인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공무원 1인당 총비용(CJ)의 전체 평균은 270,076천원이다. 재정자립도별로 살펴보면 317,904천원, 263,432천원, 255,185천원, 244,136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공무원 1인당 총비용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재정자립도와 회계책임비율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주민 1인당 총수익(CD)이 0.511,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CE)이 0.424,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CF)이 0.566, 주민 1인당 총비용(CG)이 0.492, 주민 1인당 기타이전비용(CH)이 0.569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비율은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4-16>은 상관계수를 구한 자료이다.

<표4-16>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회계책임비율과의 상관계수

		재정자립도	CA			재정자립도	CB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373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12
	유의확률(양쪽)		.000		유의확률(양쪽)		.849
	N	246	246		N	246	246
CA	Pearson(상관계수)	-.373	1	CB	Pearson(상관계수)	-.012	1
	유의확률(양쪽)	.000			유의확률(양쪽)	.849	
	N	246	246		N	246	246

		재정자립도	CC			재정자립도	CD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18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511
	유의확률(양쪽)		.783		유의확률(양쪽)		.000
	N	246	246		N	246	246
CC	Pearson(상관계수)	-.018	1	CD	Pearson(상관계수)	-.511	1
	유의확률(양쪽)	.783			유의확률(양쪽)	.000	
	N	246	246		N	246	246

		재정자립도	CE			재정자립도	CF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424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566
	유의 확률(양쪽)		.000		유의 확률(양쪽)		.000
	N	246	246		N	246	246
CE	Pearson(상관계수)	.424	1	CF	Pearson(상관계수)	.566	1
	유의 확률(양쪽)	.000			유의 확률(양쪽)	.000	
	N	246	246		N	246	246

		재정자립도	CG			재정자립도	CH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492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569
	유의 확률(양쪽)		.000		유의 확률(양쪽)		.000
	N	246	246		N	246	246
CG	Pearson(상관계수)	-.492	1	CH	Pearson(상관계수)	-.569	1
	유의 확률(양쪽)	.000			유의 확률(양쪽)	.000	
	N	246	246		N	246	246

		재정자립도	CI			재정자립도	CJ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351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366
	유의 확률(양쪽)		.000		유의 확률(양쪽)		.000
	N	246	246		N	246	246
CI	Pearson(상관계수)	.351	1	CJ	Pearson(상관계수)	.366	1
	유의 확률(양쪽)	.000			유의 확률(양쪽)	.000	
	N	246	246		N	246	246

		재정자립도	CK
재정 자립도	Pearson(상관계수)	1	.017
	유의 확률(양쪽)		.787
	N	246	246
CK	Pearson(상관계수)	.017	1
	유의 확률(양쪽)	.787	
	N	246	246

주) CA: 주민1인당 총자산, CB: 주민1인당 총부채, CC: 주민1인당 실질부채, CD: 주민1인당 총수익, CE: 주민1인당 자체조달 수익, CF: 주민1인당 지방세수익, CG: 주민1인당 총비용, CH: 주민1인당 기타이전비용, CI: 공무원1인당 총수익, CJ: 공무원1인당 총비용, CK: 공무원1인당 급여

V. 결론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기존의 예산회계보다 많은 정보가 산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예산관리와 성과평가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많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하는 재무분석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제도에 따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한 2007년 회계연도의 재무분석지표 29개 비율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무분석지표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의 상관정도를 파악해 보았다.

가설 1의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특·광역시,도,시,군,구)에 따라 재정상태비율, 재정운영비율, 회계책임비율 등 재무분석지표 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입증되었다.

첫째, 재정상태비율에서는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AH)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기타 모든 재정상태비율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서 재정상태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둘째, 모든 재정운영비율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서 재정운영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셋째, 모든 회계책임비율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서 회계책임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 2의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정상태비율, 재정운영비율, 회계책임비율 등 재무분석지표 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입증되었다.

첫째, 재정상태비율 총 9개의 지표 중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AA),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AE)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AH)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상태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재정상태비율 총 9개의 지표 중에서 3개만 채택되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상태비율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재정자립도와 재정상태비율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운영비율 총 9개의 지표 중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BB)을 제외한 모든 재정운영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세출 비율(BA)과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BC)의 경우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기타 나머지 비율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운영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외하고는 채택되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운영비율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BD)만이 0.415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비율은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계책임비율 11개의 지표 중 공무원1인당 급여(CK)를 제외한 모든 회계책임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1인당 총부채(CB), 주민1인당 실질부채(CC), 공무원1인당 총수익(CI) 및 공무원1인당 총비용(CJ)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주민1인당 총자산(CA), 주민1인당 총수익(CD),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CE), 주민1인당 지방세수익(CF), 주민1인당 총비용(CG) 및 주민1인당 기타이전비용(CH)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회계책임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공무원1인당 급여(CK)를 제외하고는 채택되었다.

재정자립도와 회계책임비율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주민 1인당 총수익(CD)이 0.511, 주민 1인당 자제조달수익(CE)이 0.424,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CF)이 0.566, 주민 1인당 총비용(CG)이 0.492, 주민 1인당 기타이전비용(CH)이 0.569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비율은 재정자립도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7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바탕으로 한 첫 년도의 결산자료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결산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에 연구하였던 총자산, 유형, 재정자립도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비교·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강인재·신종렬. 2004.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정부회계연구. 2(1). 119-138. 한국정부회계학회.
- 김갑순. 2007. 복식부기차원에서 지방재정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2007년 동계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정부회계학회.
- 김갑순·이효·정영기. 2007.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이용한 지방재정 분석지표의 개발. 2007년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23-49. 한국정부회계학회.
- 김경호. 2006. 국제공공회계기준 도입전략 : 베트남의 사례. 정부회계연구. 4(1). 53-72. 한국정부회계학회.
- 김경호·전중열. 2006.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정안의 내용과 특징에 관한 연구. 2006년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정부회계학회.
- 김경호·최원석. 2007. 국가회계기준의 국제비교. 2007년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53-67. 한국정부회계학회.
- 김성태. 2004.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 결정요인 분석. 한국동서경제연구. 16(1). 1-18. 한국동서경제연구학회.
- 김영태·이주성. 200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재정분석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11. 249-264. 한국상업교육학회.
- 김진춘. 2004.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재무보고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교육저널. 27-44. 대한경영교육학회.
- 김현. 2008. 복식부기회계에 있어 중앙-지방간 재정회계지표의 불일치 및 대응방안. 정부회계연구. 6(2). 79-107. 한국정부회계학회.
- 김혁. 2006. 재정 투명성 확보와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발전방안. 2006년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혁. 200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혁신. 2006년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정부회계학회.
- 김혁. 2006.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제도의 발전방안. 2006년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정부회계학회.
- 문광민·임동완. 2007. OECD국가들의 발생기준 회계 및 예산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정부회계연구. 5(2). 25-55. 한국정부회계학회.
- 박근수. 2005. 지방재정 평가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박규일·서원교. 200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6(2), 1-45. 대한회계학회.
- 박병희. 2006. 민선자치 10년간 재정자립 지표의 추이에 대한 연구. 재정정부논집, 8(1), 109-128. 한국재정정부학회.
- 박병희. 2007.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와 재정지표 간 관계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12(3), 121-143. 한국지방재정학회.
- 박완규·임성일. 1998. 지방재정진단지표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13(1), 187-212. 한국재정학회.
- 박익수. 2003. 지방재정자립도 측정방식의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서정섭. 2003. 지방재정분석진단 실시 및 제도개선.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원.
- 신건권. 2008. 정부회계연구의 평가와 개선방안. 회계연구, 13(2), 49-72. 대한회계학회.
- 신건권·서원교. 2006. 지방정부 회계개혁에 적합한 현금흐름표의 개발. 회계연구, 11(1), 19-53. 대한회계학회.
- 윤영진·임성일·원윤희. 2003.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하에서의 재정분석모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1), 145-172. 서울행정학회.
- 이상용. 1993. 지방재정운영평가의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원.
- 이주성. 2008.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논문집, 43, 533-544.
- 이주성. 2009.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자산 규모에 따른 복식부기회계 재무분석지표의 차이 분석. 회계연구, 14(1), 277-297. 대한회계학회.
- 이효. 2008. 사업예산제도의 쟁점과 정책방향. 2008년 동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정부회계학회.
- 이효. 200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개선방안-재정운영보고서를 중심으로-. 2006년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정부회계학회.
- 이효. 2007.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구조의 개편방안. 2007년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25-45.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효. 2008.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중앙정부 재정회계지표의 개발. 2008년 한국정부의 재정회계지표에 관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정부회계학회.
- 이효·이삼주·김유진. 2004.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지표의 설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성일. 2001. 지방재정분석·측정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방재정, 2, 39-65.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임성일·이효. 2008.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결산정보와 현금주의 결산정보간의 비교분석. 정부회계연구, 6(2). 27-53. 한국정부회계학회.

정윤한. 2006.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성과와 과제. 2006년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정부회계학회.

조성표·안홍복·유윤제. 1998. 한국상장기업 재무비율의 분류와 분포형태에 관한 실증연구.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13 No.3. 179-209.

행정안전부. 2008.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지표. 2008년 한국정부의 재정회계지표에 관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정부회계학회.

행정안전부. 2007.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인터넷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05-2008.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 인터넷 보도자료.

행정자치부(재정정책팀). 2005.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분석제도 혁신계획(안). 인터넷 보도자료.



<Abstract>

**A Difference Analysis on The Financial Ratio of Accrual Basis
Financial Reporting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Moon, ho nam

Major in Accounting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10

Since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in 2007, local governments begin to produce the abundant information on their financial status, which enables researchers to evaluate effectively their budget management and achievement status. The current study analyzes whether this new financial system affects differently local governments depending on their types and financial independency.

To achieve this goal, Analysis of variance(ANOVA) test and Correlational analysis were performed on 29 financial indicators from 24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based on their accounting information that was announced to the public in 2007.

In the first analysis, I hypothesized that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financial ratio, the financial management ratio and the responsible accounting ratio, according to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n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financial status ratio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Attempt tax preparation reserve for bad debts ratio, $P=0.05$ and other financial difference, $P=0.01$).

Secondly, the result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P=0.01$) in the financial management ratio depending on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irdly, the result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ponsible accounting ratio ($P=0.01$) depending on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second analysis, I hypothesize that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financial ratio, the financial management ratio, and the responsible accounting ratio, according to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Firstly, the result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ree indicators (Total asset preparation total debt ratio and Total debt preparation cash creation asset ratio, $P=0.01$, Allowance for bad debt-to-accrued taxes ratio, $P=0.05$) among the nine indicators of the financial status ratio. The additional analysis on correlations between the financial independency and the financial status ratio shows no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ly, all of the financial management ratio excluding Working expenses preparation interest expense ratio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udget preparation annual expenditure ratio and Interest benefit preparation interest expense ratio, $p=0.05$; all other indicators, $p=0.05$) depending on the financial independency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additional analysis on correlations between the financial independency and the financial management ratio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benefit preparation minor injury benefit ratio contrasting to the total income (pearson correferential $=0.415$) but not in other indicators.

Thirdly, the result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Resident 1 per is total debt, Resident 1 per is substantial debt, Government employee 1 per is total benefit and government employee 1 per is total expense, $p=0.05$; Resident 1 per

is total property, resident 1 per is total benefit, resident 1 per is oneself supply benefit, resident 1 per is local tax benefit, resident 1 per is total expense and resident 1 per is expense before other, $p=.01$) in all responsible ratios excluding the salary per government officer. The additional analysis on correlation between the financial independency and the accounting responsible ratio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ident 1 per is total benefit and resident 1 per is oneself supply benefit and resident 1 per is local tax benefit and resident 1 per is total expense and resident 1 per is expense before other. However, there are no correlations found between other indicators.

The current study has its limitation in examining the financial data of 2007 only whe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local governments. Therefore, future studies need to include a larger range of data and variables in order to draw more comprehensive results on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